

2004년도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산업 시행지침서

2004. 5.



농림부



# 차 례

I. 사업추진 기본방향 .....	3
1. 지원원칙 .....	5
2. 추진방향 .....	6
3. 사업 추진방식 .....	7
가. 지방자율계획사업 .....	7
나. 중앙 추진사업 .....	7
4. FTA기금 투융자 계획 .....	8
II. 지방자율계획사업 시행요령 .....	11
1. 사업 추진방향 .....	13
2.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주체 .....	13
3.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기준 .....	14
4. 지원대상자 선정 .....	15
5. 지자체의 과수산업발전계획수립 .....	16
6.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절차 .....	18
7. 지자체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 .....	20
8. 사업시행 .....	22
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	22
나. 사업컨설팅 .....	22
다. 사업계획변경 절차 .....	23

라.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방법 .....	23
마.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25
바.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25
사. 사후관리 .....	25
9. 사업평가 실시 .....	26
10. 사업추진체계 .....	27
11. 행정사항 .....	29
12. 2005년 지방자율계획 사업계획 신청안내 .....	30
<b>Ⅲ. 지방자율계획 세부사업(예시사업) 시행지침 .....</b>	<b>59</b>
1.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61
2.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 .....	73
3. 과수전용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	99
4.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	111
5. 과수 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 .....	141
6.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151
<b>Ⅳ. 중앙추진사업 시행지침 .....</b>	<b>165</b>
1. 과원 영농규모화 사업 .....	167
2.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	201
3. 과원 폐업지원사업 .....	221

# I. 사업추진 기본방향

# 여 백

# I. 사업추진 기본방향

## 1. 지원원칙

- 향후 7년간('04~'10) 총 1조2천억원의 FTA기금을 조성하여 과수산업에 중점지원
  
- 개방화에 대응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중점 추진
  - 품질로써 외국산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고품질 생산 및 차별화된 유통 체계 정착에 필요한 사업을 집중 지원
    - 신규과원 조성, 개별 농가단위 투입재 구입, 개별 유통시설 설치 등 구조 개선효과가 없는 지원은 배제
  -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목별 광역 생산·유통조직을 중점 육성
    - 농가단위의 지원도 지역 또는 품목조직 단위의 생산·유통 종합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중심으로 지원
  
-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사업계획수립 과정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사업의 부실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사전·사후관리를 추진
  
- 개방으로 직접피해를 받는 농가에 대하여는 경영안정 지원
  - 칠레산 수입으로 국산가격 하락시 일정부분 소득보전지원
  - 관세 감축품목 재배농가가 희망할 경우 폐업지원

## 2. 추진방향

- 지원대책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투융자 효율성제고
  - 정책 추진과정상 농업인, 관계전문가의 의견이 상시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화
  -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투융자 부실화 방지
  - 성과평가 등 체계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조정, 일몰, 통폐합 등 엄격한 피드백 제도화
  
- 투융자 사업에 대한 관련 주체의 책임성 향상
  -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등 사업대상자의 수용역량을 강화
  -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농업 발전을 주도하는 등 지방의 자율성 제고
  
- 투융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 확보
  - 사업시행 주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사업자 선정 등 외부 참여 확대
  - 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외부공개, 현장여론 수렴 및 평가결과 D/B구축



### 3. 사업 추진방식

사업효율성 제고 및 지방농정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율계획사업과 중앙추진사업으로 구분

#### 가. 지방자율계획사업

- 지역특성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지자체 자율계획사업으로 추진
  - 농림부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방향 및 지원기준을 제시
  - 지자체는 고품질 과실 생산·유통 종합사업계획을 자율수립
    - 개별사업별·개별경영체별 지원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지역단위 또는 품목별 조직단위로 종합사업계획 수립
  - 시·군 및 시·도는 주요 종합사업계획 단위별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동 협의체가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선정 등 전과정에 참여하고 자문토록 지원
  - 농림부는 지자체 사업계획을 심사 후 지원규모 확정
    - 민간전문가가 주축이 되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사업타당성, 사업추진능력 등을 심사
    - 우수지역(품목별조직)의 사업계획 단위로 예산 일괄지원
  -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환류 실시
    - 사업내용개선 및 지자체에 대한 재원배분 차등, 일몰, 통폐합 등

#### 나. 중앙추진사업

- 전국단위로 동일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주관
  - 대상사업 : 소득보전직불, 폐업지원, 과원영농규모화, 연구개발 및 홍보사업

#### 4. FTA기금 투융자계획(잠정)

##### □ 총투융자 계획(2004~2010)

(단위 : 억원)

사 업 명	지 원 계 획					자부담
	합 계	FTA기금			지방비	
		소계	보조	융자		
<b>합 계</b>	<b>14,811</b>	<b>12,000</b>	<b>7,146</b>	<b>4,854</b>	<b>2,811</b>	<b>2,437</b>
<b>□ 경쟁력제고지원</b>	<b>11,114</b>	<b>8,303</b>	<b>3,449</b>	<b>4,854</b>	<b>2,811</b>	<b>2,437</b>
○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6,132	4,216	1,916	2,300	1,916	1,533
○ 과수우량 묘목생산	256	160	96	64	96	64
○ 과수전용농기계임대	150	150	150	-	-	150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646	519	519	-	127	-
○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1,440	768	768	-	672	480
○ 과실가공품품질향상지원	350	350	-	350	-	-
○ 과원규모화	2,140	2,140	-	2,140	-	210
<b>□ 경영안정지원</b>	<b>3,488</b>	<b>3,488</b>	<b>3,488</b>	<b>-</b>	<b>-</b>	<b>-</b>
○ 소득보전직불	1,808	1,808	1,808	-	-	-
○ 폐업지원	1,680	1,680	1,680	-	-	-
<b>□ 기 타</b>	<b>209</b>	<b>209</b>	<b>209</b>	<b>-</b>	<b>-</b>	<b>-</b>
○ 사업운영비	174	174	174	-	-	-
○ 기금관리비	35	35	35	-	-	-

□ 사업별·연도별 지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기금지원액)

(단위 : 억원)

구 분		계	'04	'05	'06	'07	'08	'09	'10
조 달	<b>조 달 계 (A)</b>	<b>56,750</b>	<b>1,606</b>	<b>1,662</b>	<b>1,961</b>	<b>1,962</b>	<b>1,975</b>	<b>1,446</b>	<b>1,490</b>
	○ 정부출연금	22,324	1,600	1,600	1,870	1,840	1,820	1,260	1,210
	○ 자체수입	5,562	6	35	72	104	137	168	278
	-부담금	2,381	4	8	12	11	11	11	12
	-용자원리금회수	1,156	-	25	58	91	123	154	263
	-예치금이자	221	2	2	2	2	3	3	3
	○ 전년여유자금이월	102	-	27	19	18	18	18	2
지 출	<b>지 출 계(B)</b>	<b>10,640,350</b>	<b>1,579</b>	<b>1,643</b>	<b>1,943</b>	<b>1,944</b>	<b>1,957</b>	<b>1,444</b>	<b>1,490</b>
	□ 경쟁력제고	5,314,175	1,181	1,193	1,252	1,202	1,179	1,125	1,171
	○ 고품질생산 시설현대화	2,652,936	669	621	587	587	588	587	577
	○ 과수우량묘목생산	1,324,360	25	35	20	20	20	20	20
	○ 과수전용농기계 임대	662,100	50	50	50	-	-	-	-
	○ 과실전문생산 단지기반조성	330,975	53	103	104	104	104	51	-
	○ 거점산지유통 센터건설	165,228	120	120	120	120	96	96	96
	○ 과실가공품 품질향상지원	82,230	50	50	50	50	50	50	50
	○ 과원규모화	40,940	214	214	321	321	321	321	428
	□ 경영안정	19,400	373	418	662	712	748	288	287
	○ 소득보전직불	7,956	139	134	327	326	307	288	287
	○ 폐업지원	3,074	234	284	335	386	441	-	-
	□ 기 타	697	25	32	29	30	30	31	32
	○ 사업운영비	244	22	27	24	25	25	25	26
	○ 기금관리비	35	3	5	5	5	5	6	6
<b>여유자금운용(A-B)</b>	<b>102</b>	<b>27</b>	<b>19</b>	<b>18</b>	<b>18</b>	<b>18</b>	<b>2</b>	<b>-</b>	

# 여 백

## Ⅱ. 지방자율계획사업 시행요령

여 백

## II. 지방자율계획사업 시행요령

### 1. 사업 추진방향

- 과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품질 생산·유통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지원**
  - 고품질 안전생산·유통체계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우수경영체에 우선지원
  - 지역단위 또는 품목조직 단위로 일괄 지원
  - 엄격한 평가체계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효과성 제고
- 지자체가 수립한 **과수산업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추진**
  - 지자체의 생산·유통 종합계획에 따라 계획적인 사업추진
  - 지자체 과수산업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및 연차적 종합사업 추진

### 2.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주체

- **시장·군수** : 자체계획의 수립·시행
  - 시·도 계획 또는 전국단위 사업계획 중 관할구역내 사업의 시행
- **시·도지사** : 2개 시·군이상 광역계획의 수립·시행
  - 전국단위 사업계획 중 관할구역내 사업의 시행
  - 시·군 사업계획의 심사·조정·관리
- **전국단위 사업주체** : 전국단위 사업계획을 수립
  - 시·도(시·군)의 사업계획에 전국단위 사업계획을 반영(계획수립시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
  - 시·도(시·군)의 사업계획에 반영이 어려운 전국단위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필요시 농림부가 사업계획 심사·조정

### 3.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기준

#### □ 지원대상사업

- 고품질·안전 과실의 생산·유통·가공·수출 등 계열화에 필요한 사업

#### — < 지원대상 예시사업 > —

- 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②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
- ③ 과수전용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 ④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 ⑤ 과수 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
- ⑥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예시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자체의 자체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지원
- 과수산업의 구조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 지원대상 제외 > —

- ①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신규과원조성
- ② 개별농가단위 유통시설설치
- ③ 직접 투입재(비료·농약·농기계, 소모성자재 등)구입 지원
- ④ 기타 부지매입비·음식점·숙박시설 설치비 및 임대비·행사성·경상적 경비 등

#### □ 지원기준

- 예시사업의 경우 「Ⅲ. 지방자율계획 세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지자체 자체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재원별 부담비율은 지원대상자,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예시사업의 부담비율을 준용



#### 4.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주체(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의 범위

- ① 품목 전문조합
- ② 지역농협
- ③ 지역농협 연합사업단
- ④ 영농조합법인
- ⑤ 산지유통센터(APC), 산지전문출하조직
- ⑥ ① ~⑤조직의 연합사업단

※ 당해 품목의 관할 재배면적이 100ha 이상일 것(단, 100ha미만인 경우에도 조직화 정도, 과원의 밀집도, 브랜드 인지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가능)

※ 기준에 맞는 품목별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① 연합사업단을 구성하여 기준에 맞추거나 ② 필요시 기준에 맞는 품목별 조직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그 조직을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 수립

□ 선정절차

- 지자체는 지원대상 사업시행주체와 협의
- 신청 또는 공모를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선정

#### < 지원대상 농가의 선정기준 >

□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 발전계획을 수립한 사업시행주체의 구성원
  - APC, 전문출하조직의 경우는 출하협약 체결자
- 지원대상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자
- 발전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 농업종합자금지원시스템에 의해 지원 가능한 농가
- ※ 심사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한 농가에게는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지침에 의거 융자금이 3천만원을 넘는 사업은 대출 기관에서 사전심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대출기관은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
- 사업계획 심사·확정시 선정된 경영체만 지원 대상으로 검토

### [ 선정기준 미달 농가에 대한 재심사 ]

- ◆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시·군에 **심사위원회**를 두어 **재심 요청이 가능하도록** 체제 구축
  - 사업성취가능성, 신용도, 기술,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재심사후 대출기관에 통보
  - \* 심사위원회 : 전문가 협의체, 농정심의회 활용 또는 행정·지도기관·관련 단체, 독농가 등으로 구성

## 5. 지자체의 과수산업발전계획 수립

- 「지방자율계획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지자체의 장은 반드시 **자율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 계획수립주체 : 시·군, 시·도
  - 계획기간 : '04~'10(7년간)
  - ※ 전국단위 사업주체도 지자체에 준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과수분야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 구 성 : 10명 내외로 실무진 중심으로 구성
    - 과수유통 전문가, 경영자문 전문가, 품목생산전문가,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과수전문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센터 등 실무자급으로 구성
    - ※ 농진청에서 지원하는 「특화사업겸임연구관」사업단의 주 사업품목과 같은 경우 사업단으로 협의체를 대신할 수 있음

- 협의체의 역할
  - ① 지자체의 과수산업발전계획수립 자문
  - ② 사업계획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
  - ③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여
  - ④ 사업 추진단계 및 종료후 평가 참여
  - ⑤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활동
- 협의체 운영비 : 선정된 사업계획별로 별도 기금사업비에서 지원  
- 「특화사업겸임연구관」 사업단을 활용하는 경우 차등 지원

□ 계획수립 방향

-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발전가능한 품목을 선정
- 지역단위 또는 품목조직 단위로 **발전목표를 설정**
- 목표달성에 필요한 생산·유통·가공·수출사업 등이 연계 추진되도록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개별사업별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지역특성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생산·유통의 계열화 주체가 있는 **품목별조직 단위로 지원계획 수립**
- FTA, DDA 등 개방화 추세를 감안하여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선택과 집중

□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지역과수산업 현황(생산, 유통 등), 여건 분석 및 향후과제
- 중장기 비전 및 육성목표, 사업추진 전략 및 로드맵
- 시행사업에 대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내역 및 컨설팅 계획
- 사업시행주체의 사업여건 분석 및 발전목표 설정
- 사업시행주체 육성목표 및 목표달성 전략
-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 및 사업량
- 사업별 단가 산정기준 및 총 사업비, 재원별 부담액

□ 사업계획 세부작성요령 : 별지 제1호서식

## 6.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절차

### □ 시·군

-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주체 및 농업인, 전문가 협의체 등의 참여하에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
- 과수산업발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주체 단위로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에 사업물량, 지원단가, 보조비율을 명시
- 전문가 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사업계획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도에 제출
  - 자체 심사·평가를 거쳐 농림부 서면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사업계획은 시·도에 제출시 사업신청 제외
-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상이한 사업계획서는 농림부 평가 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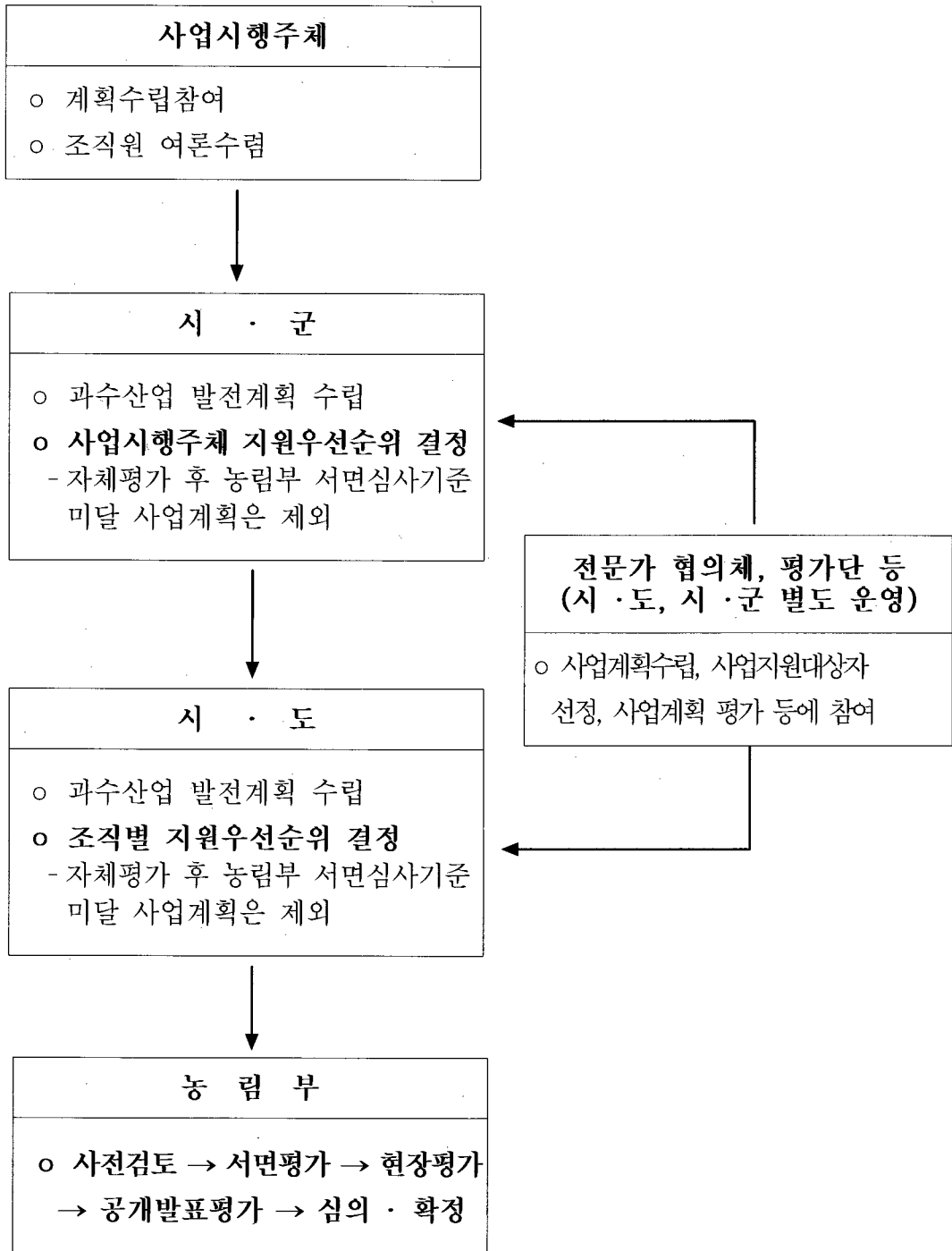
### □ 시·도

- 시·도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시·군과 같은 절차로 수립
- 시·도 과수산업발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체평가기준으로 시·도단위 사업계획과 시·군 사업계획평가
  - 자체 심사·평가지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평가 실시
  - 농림부 서면평가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계획은 사업신청 제외
- 시·군 품목조직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림부에 제출
  -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상이한 사업계획서는 농림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 시·도가 직접 추진하는 광역사업계획은 시·군과 같은 절차로 작성하되 우선순위 없이 제출

### □ 전국단위 사업주체 : 농림부에 직접제출

- 사업참여자의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자문 등을 거쳐 품목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계획서 작성
- 해당 시·군(또는 시·도)의 사업계획수립에 적극참여

## 【 사업 신청절차 】



## 7. 지자체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

### 가. 원칙과 방향

#### □ 「과수산업육성대책」의 정책 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심사

- 투자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심사
- 품목별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종합적으로 단위사업계획심사
- 공동마케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심사
- 사업계획의 보완·조정·통합을 통한 정책방향 지향적 심사

#### □ 사업계획의 수립 → 집행 → 성과까지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

-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을 평가
- 생산·유통의 혁신성과 효율성을 평가
- 사업목표의 성공가능성과 사업효과를 평가

####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평가단에 의한 다단계 평가 및 현장실사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단 인력풀을 구성하고 평가단계별 평가활용
  - 비공개 서면평가 : 세부심사기준에 의한 서면평가
  - 현장 평가 : 사업계획, 사업여건 등을 현장확인 및 면접조사
  - 공개발표평가 : 발표 및 질의응답 후 사업계획 전반을 총괄평가

## 나. 절차와 방법

### 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농림부



### ② 실무 사전검토

- 과도한 사업계획이 접수될 경우, 시·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일정 순위까지만 심사대상으로 선정

: 농림부(실무담당부서)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APC관련 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병행검토
- 조치: 부실 사업계획 제외, 미흡과제 보완요청



### ③ 심사 및 평가

: 전문평가단 주관, 3단계평가

####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사업계획별 5~7명의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내용: 타당성,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조치: 총점 100점기준 70점 이하는 제외(부문과락 50점)



#### 2단계 : 현장 평가

- 서면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하여 4명 내외의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
  - 평가내용: 사업계획 주요사항 확인
- 조치: 사업불가로 평가된 사업계획은 제외



####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이전단계 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
  - 평가내용: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조치: 총점 100점기준 80점 이하는 제외(부문과락 60점)



### ④ 사업비 심의·조정

: 농림부



### ⑤ 사업 최종선정

: 농림부

- 사업계획 및 사업비 확정·시달

※ 세부 지방자율계획사업 심사·평가 절차와 방법은 별첨 참조

## 8. 사업시행

### < 일 러 두 기 >

- 이 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시행 당해연도의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사업시행
  - 세부사업 추진은 「Ⅲ. 지방자율계획 세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
- 이 지침서의 개별 내용이 농림사업시행지침서와 서로 다른 경우 이 지침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

### 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 확정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 작성하여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작성한 세부시행계획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지시
    - 시·도지사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사업확정후 30일이내에 농림부 제출

### 나. 사업추진 컨설팅

- 전문가 협의체(특화사업겸임연구관 사업단)를 통한 사업추진 컨설팅 계획을 수립
  - 전문가 협의체의 주요 역할 : 사업계획 수립참여 및 평가, 사업지원 대상자의 선정참여, 경영·기술지도, 현장애로 해결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컨설팅 비용의 지급 : 사업계획의 규모·내용 등을 감안하여 기금사업운영비에서 일괄 지급
  - 비용 지원분야 : 전문가 협의체의 운영, 전문 컨설턴트의 활용, 사업평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비용



#### 다.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사업물량 및 공종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세부사업비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 차 상부기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 라.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방법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자금배정을 요구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 마.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이상 점검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바.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 사.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고품질과실 생산·유통종합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후 1개월 이내에 현지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세부사업별 사후관리는 세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 사후관리기간 : 건축물은 10년, 기계·자재 등은 5년(별도로 관리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 9. 사업평가 실시

### □ 자체 평가

- 평가 주체 : 시·도, 시·군
- 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후 3~6월 중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
  - 평가 시기 : 사업종료후 3월 이내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 □ 중앙 평가

- 평가 주체 : 농림부
- 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후 3개월 이후
  - 평가 방법 : 전문 평가단 평가
  - 평가 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컨설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예산지원중단 등
- 사후평가
  - 평가 시기 : 사업종료 전후
  - 평가 방법 : 전문 평가단 평가  
(필요시 민간전문기관에 사업성과분석 용역 의뢰)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지자체별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 10.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 군수)

- 사업총괄기관 : 농림부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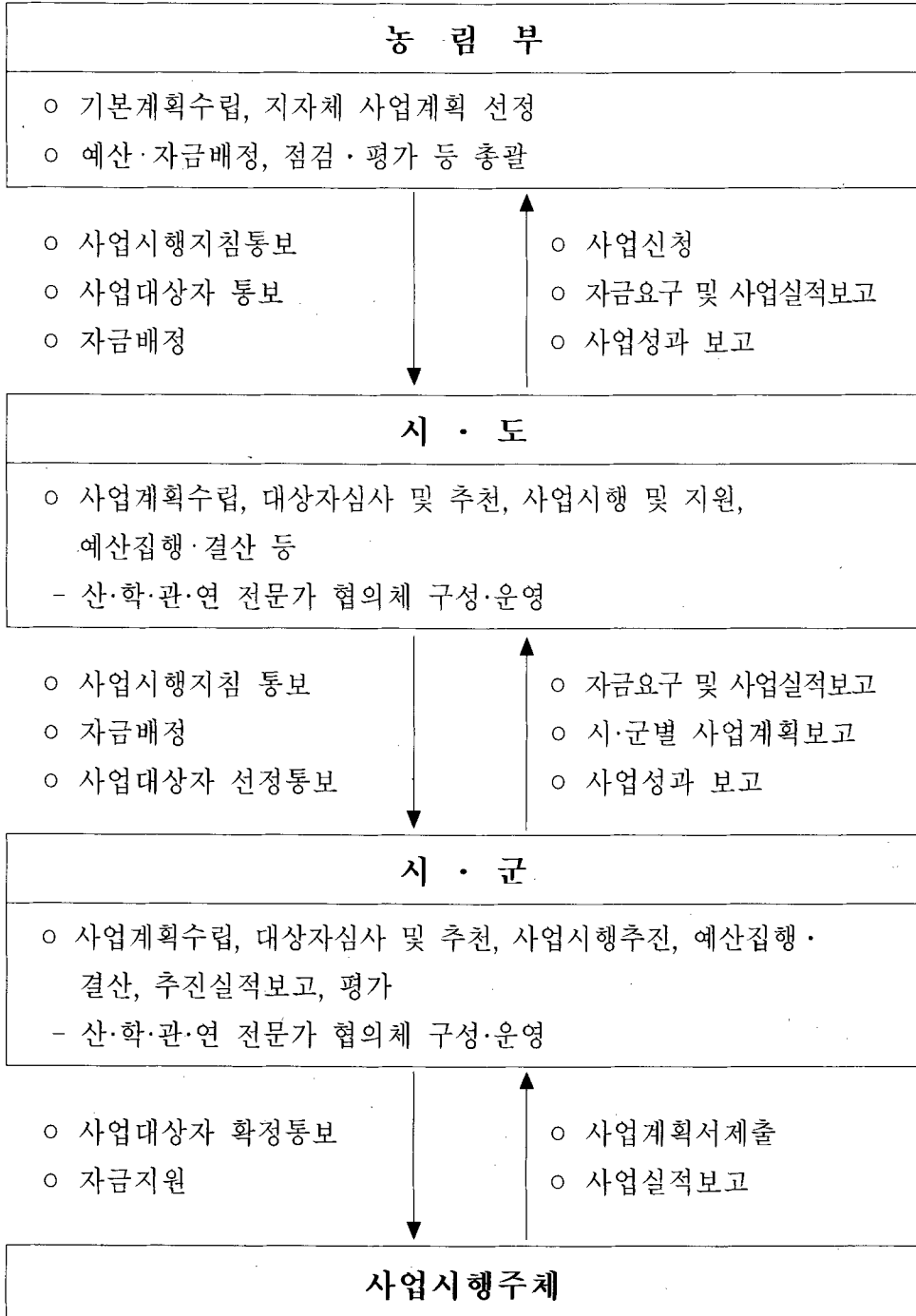
□ 사업담당 총괄부서 및 협조부서

- 농림부 : 과수화훼과(02-500-1880,1881)
  - 협조부서 : 유통정책과, 식품산업과, 채소특작과, 농촌진흥과, 농업기술지원과
- 시·도 : 과수담당부서(농산유통과, 원예유통과, 유통특작과 등)
  - 협조부서(세부사업시행부서) : 농림사업시행지침중 유사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예) 과수산업 경쟁력제고사업의 생산기반정비사업 →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생산기반정비사업 담당부서
- 시·군·자치구 : 과수담당부서(농림과, 농정과 등)
  - 협조부서(세부사업시행부서) : 농림사업시행지침중 유사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 사업시행체계(순서)

- ① 과수산업발전계획수립(시·군, 시·도, 전국단위 품목조직)
- ② 품목별 지원 사업계획 수립(시·군, 시·도)
- ③ 자율심사·평가(시·군, 시·도)
- ④ 사업신청서 제출(시·군→시·도→농림부)
- ⑤ 사업심사·평가(농림부)
- ⑥ 사업선정 및 예산배정(농림부→시·도→시·군)
- ⑦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시·도, 시·군, 사업시행자)
- ⑧ 지자체 자체 평가(시·군, 시·도)
- ⑨ 중앙 평가(농림부)

【 사업시행 체계도 】



## 11. 행정사항(보고 등)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계획 보고 : [별지 제1호 서식]
  - '04년도 사업신청 기한
    - 시·군 → 시·도 : 시·도에서 자율결정
    - 시·도 → 농림부 : '04. 6. 20까지
  - 세부사업추진계획 보고
    - 시·도 → 농림부 : 사업계획을 확정·통보받은 후 30일 이내
- 사업계획서 제출방법 : 「6.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절차」에 따라 제출
  - 단위사업계획별로 제본하여 2부 제출(한글작성 File은 별도 CD로 제출)
- 월별 자금배정 요구 : [별지 제3호 서식]
  - 시·도 총괄부서 → 농림부(과수화훼과) : 매월 25일까지
- 사업추진 진도보고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정산 결과보고 : 사업익년도 3월 2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 기타사항 등은 불임의 개별 세부사업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예) 농기계임대사업 : 시·도지사는 매년 임대사업 추진실적을 익년도 1월 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농기계임대사업 별지 제3-3호 서식)

## 12. 2005년 지방자율계획 사업계획 신청안내

- 각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준비 사항을 이행하고 시·군(시·도) 사업계획에 반영
  - 기반정비사업,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등은 사전절차 준수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부에 8월 말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 및 방법은 '04년 사업계획서 제출방법과 동일
    - '05년도 사업신청 기한
      - 시·군 → 시·도 : '04. 8. 10까지
      - 시·도 → 농림부 : '04. 8월 말일
    - 사업계획서 제출
      - 신규사업계획 : '04년도와 동일
      - '04년도 선정 사업계획 : '05년도 해당 세부사업계획만 제출
  - 사업계획서 제출방법
    - 신규 사업계획 : 「6.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절차」에 따라 제출
      - 단위사업계획별로 제본하여 2부 제출(한글작성 File은 별도 CD로 제출)
    - '04년도 선정 사업계획 : 시·군은 시·도를 거쳐 농림부에 제출
      - 작성서식은 별도 시달
  
- '05년도 사업계획 선정 및 사업비 확정

### < 신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 >

- 신규 사업계획 : 「7. 지자체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에 따라 평가
  - 신규 사업계획의 범위 : '04년도 사업신청시 「지자체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지자체의 사업계획



- '04년도 사업신청에 따라 사업계획을 평가 받은 사업계획 : 평가단계를 통과한 이후단계부터 평가
  - 예) '04년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1단계 비공개 서면평가에서 사업계획이 제외된 경우 : '05년도에는 비공개 서면평가부터 심사·평가 실시

<기 선정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비 확정>

- '04년도 사업신청시 선정된 「지자체 과수산업발전계획」에 따른 '05년도 사업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심의·조정
  -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신규사업계획으로 재평가
- '05년도 사업비 및 지원조건은 정부의 '05년도 FTA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 운용계획심의나 국회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첨부 >

## 지자체의 과수산업 발전계획 작성 예시

### ○ ○ ○ ○ 종합육성계획

#### 1. 과수산업현황

※ 관내(신청사업 소속 시도, 시군, 읍면 등)의 사업신청품목 전체에 대한 현황

사업신청품목 :

사업신청지역 : ○○군 (○○도 또는 ○○읍, ○○면)

일반현황

구 분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소 득 액 (백만원)	생산비중 (%)		
					전국대비	시도대비	시군대비
2000							
2002*							
등락율(%)							

\* 2000년을 기준으로 2002년 또는 2003년으로 작성

과원 규모별 현황

구 분	0.1ha 미만	0.1~ 0.5	0.5~ 1.0	1.0~ 1.5	1.5~ 2.0	2.0~ 3.0	3.0ha 이상	계
농가수								
비율(%)								100.0
면적(ha)								

연령대별 농가현황

구 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농가수						
비율(%)						100.0
면적(ha)						

□ 수령별 과수현황

구 분	미과수	성 과 수				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년 이상	
면 적(ha)						
비 율(%)						100.0

□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 종						기 타	계
재 배 면 적 (ha)	'02						
	'03						
	03비율						100.0
생산량 (톤)	'02						
	'03						
	03비율						100.0

□ 생산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시설)

*키낮은 과 원	관수시설	묘목생산		SS 방제기	방풍방조 시 설	농로개설	기 타
		묘포장 면 적	묘목생산 실 적				
ha ( %)	ha ( %)	ha	천주	대	ha	%	

\* 키낮은과원은 예시이며, 해당품목에 맞는 메뉴로 변경기재(예. Y자형과원 등)

□ 유통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취급시설)

구 분	산 지 유통센터	저 은 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 시설	간 이 집하장	개 량 저장고	경매식 집하장
개 소								
면적(m <sup>2</sup> )								
03처리량(톤)								
투자비 (백만원)								

사업 참여조직 현황

조직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비고

※ 연합사업단의 경우 사업참여조직별로 작성

비참여조직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유통시설 및 조직)

조직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미참여 사유

생산·출하여건

- 현재 지역내 과수산업의 현황, 문제점 등
  - 
  -
- 지역특성,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장단점, 소비시장 선호도, 인지도 등
  - 
  -
- - 
  -

## 2. 사업목표

### 가. 종합목표

- 목표연도의 지역 과수산업 청사진 제시
  -

- 항목별 목표

구 분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고품질생산 (톤)	총소득 (억원)	호당소득 (만원)
2003 년						
( )년						
증감(%)						

- 생산, 유통분야 등의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 나. 추진전략

-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재배농가 경영안정, 구조조정 전략 등
- 생산·유통·가공·수출 연계 및 우수조직 참여전략 등
- 세부사업간 연계전략 등
- 

### 다. 사업추진 로드맵('04~'10)

- 연차별 사업목표

- 최종연도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제시
- 
-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계획, 추진일정 등(가급적 표로 작성)

- 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 

라. 추정 손익계산서(작성가능한 사업만 작성)

※ 거점산지유통센터는 필수적으로 작성

목표연도(20   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 기타수익			○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일반관리비 ○ 기타비용			

0000년(사업완료 초년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 기타수익			○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일반관리비 ○ 기타비용			

### 3. 사업시행주체 및 참여조직 현황

※ 신규 연합사업단은 작성가능한 사항만 성실히 기재

#### 가. 사업시행주체(총괄사업조직) 현황

□ 조직명 :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산량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대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 %)	규격출하 (○,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02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03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지원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이집하장 등  
농림사업 지원내역 기재

※ 총괄사업조직 및 참여조직의 3년간의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제출

□ 주요 사업내용·실적(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과원 규모별 농가수(연령별), 재배면적, 품종별 현황, 신품종 재식현황 등
- 고품질·안전과실 생산현황
  - 생산기반시설, 설비 현황, 확보정도
  - 조직(단체)주관 교육, 기술지도, 경영지도, 기술평준화 노력 등 실적  
(※ 실적자료 첨부)
  - 고품질, 안전과실생산노력
  - IFP, IPM, INM, GAP 등 실시여부, 참여농가현황  
{※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관련기관(도청, 진흥청, 센터)확인서 등 첨부}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규격출하 등 실적(※ 인증서, 확인서 등 첨부)
  - 친환경 과실 생산노력 및 실적, 화학비료, 농약 절감실적 등



○ 생산성향상, 경영안정 노력

- 농기계, 생산설비 구비율, 공동이용 현황 등  
(※ 농기계·설비의 공동이용계약서, 자체규약 등 첨부)
- 인터넷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수집 및 농가간 공유현황, PC보급현황
- 과수재해보험 가입현황 (※ 보험증권, 증서 등 가입증빙자료 첨부)

○ 유통·물류 개선노력

- 물류표준화, 표준규격출하 현황 및 실적
- 물류장비 보유 및 활용현황(지게차, 표준파렛트, 선별기, 광폭차량, 냉동탑차, 컨베이어, 등)
- 소비자 기호 반영을 위한 포장규격 다양화 실적 등
- 수확후관리 시스템 운영현황 및 실적

○ 판매·수출 현황 및 실적

- 공동선별, 공동계산, 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현황 및 실적
- 출하주체 광역화 등 현황 및 실적  
(※ 참여농가·조직·시설간 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첨부)
- 출하·판매형태별 물량, 금액, 비율(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수출 등)
-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대량수요처(가공공장, 요식업소, 군납 등), 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 소매상 등 거래처 현황, 연도별 거래실적, 구매담당자(소속 직급, 이름, 연락처) 등  
(※ 거래처의 판매·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빙서류 등 첨부)
- 브랜드 개발실적 및 마케팅, 홍보·판촉활동 실적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물량, 금액 등)  
(※ 수출실적확인을 위한 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첨부)

○ 기타 사업현황 및 실적

- 전문경영인 및 전문인력 확보현황(※ 이력서, 고용계약서 첨부)

나. 참여조직 현황

○ 참여조직(농업인) 선정원칙·기준 및 참여조건 등

-  
-  
-

1) 조직명 : ○○ 조합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산량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대		
사업실적	품목	출하실적				품질인증 (○, %)	규격출하 (○,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02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03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내용은 총괄사업조직과 동일
- 
- 
- 
-

2) 조직명 : ○ ○ 법인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산량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대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 %)	규격출하 (○,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02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03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내용은 총괄사업조직과 동일
- 
- 
- 
- 

※ 참여조직(단체)은 전부 기재

## 4. 사업추진 종합계획

### 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 사업추진방향

- 
- 
- 
- 

#### □ 사업지원체계

- 기관·조직별 역할분담 계획
  - 사업주관기관(지자체), 총괄사업조직, 참여조직, 농업인간 역할분담
-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및 계획  
(※ 전문가협의체 구성, 사전심의·조정 실적자료 첨부)
- 사업비 집행단계의 현장 지도·점검계획
- 사업평가/피드백, 사후관리 계획  
(※ 내부방침 등 자체평가지표, 피드백 계획자료 첨부)
- 기타 지원계획 상세히 기록
-

나. 투융자계획

□ 총 투융자계획

< 연차별 계획 >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계
보 조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부담									
계									
생산시설현대화									
생산기반정비									
농 기계임대									
산지유통센터									
우량묘목생산									
가공시설현대화									
기 타									

< 사업별 계획 >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용자(C)	자담(D)	
<b>합 계</b>								
○ 생산시설현대화 -								
·								
○ 생산기반정비 -								
·								
○ 농기계임대 -								
·								
○ 거점산지유통센터 -								
·								
○ 기 타 -								
·								

## 5. 생산·유통 혁신계획

### 가. 생산계획

#### 연도별 생산계획

- 연도별·품종별·재배형태별 생산계획 등 세부적으로 기재
- 사업투자 전후 비교
- 
- 

#### 생산혁신 효과

- 사업투자 전후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계획 비교
- 생산규모화, 경영안정 효과 등
- 
- 

### 나. 산지유통개선 실적 및 계획

#### 출하주체 광역화 등 육성방안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 

#### 공동계산·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 

#### 산지유통 및 물류개선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품질인증, 표준규격출하, 물류표준화 등
-

기존 산지유통시설 현황 및 활용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 

전문인력 및 전문 CEO 영입 등

- 품질관리, 마케팅, 경영분야 등
- 
- 

기 타

- 
- 
- 

**다. 생산·판매·수출계획**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 

브랜드 마케팅 및 판촉활동 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수출전략
-

## 6. 기대효과

○

○

○

○

○

○



## 7. '04 사업추진 계획

### 가. 2004년도 예산 요구액(총괄)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용자(C)	자담(D)	
합 계								
○								
-								
-								
.								
○								
-								
-								
.								
○								
-								
-								
.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 예시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근거를 첨부

###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  
(※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부지(시설설치 사업포함시),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법인·대표자명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 용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사업간 연계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li><li>-</li><li>○</li></ul>
---

(1)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현황 및 문제점

○

세부사업내용

○

추진방식 및 추진조직

○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소요예산(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등) 조달계획

○

(2) 과수 생산기반정비사업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같은 내용 및 순서로 작성

○

○

※ 붙임 : 과실생산기반정비사업 예정지 조사결과

(3) 기타 세부사업도 같은 양식으로 작성

##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 ◆

### < 필수 첨부자료 >

#### 1. 개별 사업계획서

- 1-1. 과실생산기반정비사업 예정지 조사결과(별지 제2-1호 서식)
- 1-2. 과수전용 농기계임대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3-1호 서식의 붙임)
- 1-3.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4-1호 서식)
- 1-4. 과수 우량묘목생산 사업(지원)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
- 1-5. 과실 가공시설현대화 사업계획서(별지 제6-1호 서식의 붙임)

### < 해당실적이 있을 경우 첨부자료 >

#### 2. 경영실적, 자금확보 등

- 2-1. 총괄사업조직 및 참여조직의 3년간의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경영장부, 등)
- 2-2. 담보제공능력 : 보증기관의견서, 부동산 관련서류(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 (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 2-3. 자부담확보 증빙 : 예금평잔확인서(법인, 대표자명의), 출자관련 정관, 의사록

#### 3. 각종 인증서, 증명서

- 3-1.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등 인증서(확인서)
- 3-2. 과수 재해보험 가입증명서(증권, 증서 등)
- 3-3. 수출실적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 3-4. 부지확보 증빙 : 등기부등본(법인, 대표자), 사용승낙서, 인감증명(타인소유)

#### 4. 계약서, 협약, 규약 등

- 4-1. 사업참여 조직·농가·유통시설 등의 사업참여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 4-2. 공동출하, 공동계산, 공동마케팅 등의 자체규약
- 4-3. 지역·조직간 연합판매 관련 협약서, 판매실적 등 증빙자료
- 4-4. 농기계·설비 등 공동이용 계약서 또는 자체규약

4-5. IFP, IPM, INM, GAP 등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확인서(도청, 진흥청, 센터 등 확인)

4-6. 조직(단체)의 친환경안전과실 생산(관리)지침 및 조직(단체)의 확인서

4-7.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기타 거래처의 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명서류 등

## 5. 사업준비상황 및 실적자료

5-1. 브랜드마케팅(개발 및 판매), 홍보활동, 판촉이벤트 등의 실적자료

5-2. 조직(단체) 주관의 교육, 기술지도·경영지도 등의 실적확인을 위한 교육 자료, 실시결과 등

5-3. 전문경영인, 실무전문인력(품질관리, 마케팅 등)의 이력서, 고용계약서 등

5-4. 지자체의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문서, 방침, 의회의결결과 등)

5-5. 지자체의 현장지도점검, 교육 등 자체지원 실적자료(방침, 보고서 등)

5-6. 지자체의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전 심사·조정 실적자료

5-7. 지자체의 사업추진 자체 평가지표, 피드백계획 등 자료(내부방침 등)

5-8. 기타 매출원가 산출에 필요한 비용산출 자료

[ 별첨 ]

## 지방자율계획사업 심사·평가 절차와 방법

### 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 당년도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비를 감안하여 선정

### ②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산지유통센터(APC) 신설·증설이 포함된 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에 의한 심사기준으로 검토 실시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 ③ 심사 및 평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5~7명의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제시 : 농림부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70점이하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50점이하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2단계 : 현장 평가>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계획에 대해 현장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4명내외로 팀구성(서면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 내용 정밀확인 및 여건 확보 여부 등
  - 평가대상 사업 :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APC, 기반정비) 등
  
- 평가결과 조치
  - 사업불가로 평가된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공개발표평가의 평가 자료로 활용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이전 단계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이하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점이하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심사평가기준 :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 ④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범위(연차사업, 당해연도 사업), 사업 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 세부 사업별로 연차사업과 당해연도 사업으로 구분

#### ⑤ 사업계획 최종선정

-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30% 공개발표평가 7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 동점 발생시 4번 대분류 평가항목(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 사업계획 최종선정

####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 <연차사업과 당해연도 사업으로 구분선정>

- 연차사업계획 선정의 의미 : 연차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차년도 사업선정시 계속사업으로 심사·평가
  - 연차별 사업비 및 사업내용을 확정된 것은 아님
  - 매년 사업내용과 사업비는 심의·조정

**FTA 지방자율계획사업 심사평가지침**

평가항목		등급				등급 심사 기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1.사업계획의 적정성 (25점)	1-1.사업목표의 명확성	5	4	3	2	① 해당품목의 경쟁력제고 및 구조개선을 위한 증장기적으로 명확한 목표가 있는가? ②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사업목표와 추진계획 및 일정이 적정한가?	
	1-2.추진전략의 적정성	5	4	3	2	① 과수산업 경쟁력제고 및 지역농업혁신 차원 에서 전략이 적정한가? ② 우수경영체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바탕으로 생산·유통·가공·수출을 연계한 추진전략 을 갖고 있는가?	
	1-3.품목선정의 적정성	5	4	3	2	① 해당품목이 지역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할 때 타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가? ② 시장인지도, 생산·출하 등 유통부문에서 타 지역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가? ③ 과잉생산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신규과원조 성 등 불합리한 투자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1-4.세부사업간 연계성	5	4	3	2	① 세부사업간 목표달성을 위한 연계성은 있 는가? ② 해당품목의 경쟁력제고에 필요한 세부사업 계획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1-5.자금투자계획 의 적정성	5	4	3	2	① 각 사업별 지원단가, 산출근기 등이 적절히 계산되었는가? ②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자금투자계획은 적정한가?	
2. 생산혁신 실적 및 계획 (20점)	2-1.고품질과실 생 산	5	4	3	2	①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정도는 어떠하며 향후 확보계획은 적정한가? ② 생산기술 향상·평준화 등을 위한 기술지 도, 교육 등의 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2-2.안전과실 생 산	5	4	3	2	①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도입실적 및 노력이 있 는가? (GAP, IFP, IPM, INM 도입 등) ② 친환경 과실 생산을 위한 화학비료, 농약 등 절감 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2-3.생산성향상	5	4	3	2	① 사업참여농가(조직)의 재배면적은 어느정도 규모화 되어있으며, 향후 규모화계획은 어떠한가? ② 기계화, 과학화 노력 및 생산비절감을 위한 실적·계획이 있는가?	
	2-4.경영안정	5	4	3	2	①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실적 및 가입 계획은 있는가? (감귤 및 재해보험 비대상 품목은 제외) ② 분산출하, 노동력 분산, 생산성 향상, 가동율 제고, 위험분산 등을 감안하여 재배품종은 적절하게 선택·구성되었는가?	



평가항목		등급				등급심사기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3. 유통혁신 실적 및 계획 (30점)	3-1.유통시설 활 용	5	4	3	2	① APC등 기존 투자시설의 활용 및 연계사용 계획은 적정한가? ② 계획중인 산지유통시설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가?	
	3-2.물류개선	5	4	3	2	① 물류표준화, 물류기계화, 파렛트출하 등 산지유통 개선실적과 계획은 있는가? ② 표준규격출하를 위한 등급규격, 포장규격, 표시사항 등의 이행 실적과 그 상황은 어떠한가? ③ 소비자 기호반영을 위한 포장규격 다양화(소포장, 개별포장 등) 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3-3.수확후관리	5	4	3	2	① 예냉·선별·저장·수송 등 고품질유지를 위한 수확후관리 시스템의 보유 및 부분별 연계성은 적정한가? ② 수확후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적정한가?	
	3-4.판매·수출	5	4	3	2	① 대형유통업체(대량수요처) 직거래, 브랜드마케팅,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② 지속적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영향력 있는 거래처 유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판매(수출)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3-5.출하형태	5	4	3	2	① 공동마케팅에 적절한 생산규모의 보유여부 및 공동출하·공동계산 실적 또는 목표가 있는가? ② 연합판매사업 실적 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는가? ③ 공동마케팅, 연합판매 등을 위한 자체규약은 있는가?	
	3-6.총괄사업 조직의 형태	5	4	3	2	① 총괄사업조직이 공동마케팅, 출하광역화(물량규모화)등 산지유통혁신을 총괄할 만한 조직인가? ② 과거 경영실적 및 운영실태평가 결과는 어떠한가? (신생조직은 평가제외)	
4. 사업의 성공가능성 (25점)	4-1.사업추진의지	5	4	3	2	①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예산(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② 부지확보, 자부담조달, 전문인력(전문경영인·품질관리·마케팅) 확보현황 및 계획은 어떠한가?	
	4-2.전문인력확보	5	4	3	2	① 전문경영인 확보여부 및 자질, 경영능력 정도는? ② 품질관리, 마케팅 등 전문인력 확보여부 및 계획	
	4-3.투자효율성	5	4	3	2	① 사업 완료연도기준 투자효율성은 얼마나 높은가?	
	4-4.심사평가/ 피드백시스템	5	4	3	2	① 사업계획 사전심사여부 및 전문가협의체의 지속적인 컨설팅계획이 있는가? ② 사업성과를 평가할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를 피드백할 시스템이 있는가?	
	4-5.성공가능성	5	4	3	2	① 평가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업의 성공가능성은 얼마나 높은가?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b>※ 가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점을 줄 수 있음</b> ① 공동마케팅 실적(전체 매출규모의 10% 이상)이 있는 경우 (3점) ② “조직간 연합사업”, “공동브랜드 출하”, “공동계산”을 위한 자체 규약이나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각 항목별 1점씩 가점 (3점) ③ 자조금조성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 (3점) ④ 공동브랜드 출하는 시군경계를 넘어선 광역 브랜드로서 사업참여조직이 자체 개발한 것이어야 함						가 점	
						총 점 (기본점수+가점)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생산혁신 분야		
3. 유통혁신 분야		
4. 사업의 성공가능성		
5. 종합 의 견	사업계획 선정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기타사항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1차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 평균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공개발표평가는 80점)
  - 대부분류 평가항목 : 평균 5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공개발표평가는 60점)
  -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2차 : 1차선정 사업을 평점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금예산의 150%범위 내에서 공개발표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

[ 별지 제3호 서식 ]

○○○○년도 ○○월분 국고 자금배정 신청서

(○○시·도)

(단위 : 천원)

사 업 별	예산액	교 부 결정액	자 금 배 정			사업추진 진 도
			기배정	금회배정	누계	
합 계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FTA기금 과수산업 경쟁력제고사업 추진(정산)결과 보고**

(단위 : 천원)

지역별	조직별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계획					집행실적(정산)					차년도이월액		불용또는 집행잔액
			품목	계획(A)	실적(B)	대비(B/A)	계	국고	용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용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용자	국고
		합계			%														

- 주) 가.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대 실적율,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ha, 종 등으로 기재
- 나. “세부사업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세부사업내용을 기재
- 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 라. 부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자별로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미집행액(이월, 불용, 집행잔액으로 구분)및 사유 등
- 마. 세부사업별 공통양식이외 사항은 사업별 양식에 의거 별도 작성하여 첨부

### Ⅲ. 지방자율계획 세부사업 시행지침 (예시 사업)

1.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61
2.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 .....	73
3. 과수전용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	99
4.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	111
5. 과수 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 .....	141
6.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151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  
(과장 여인홍, 사무관 이상혁)입니다.

여 백

## 1. 목 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 2. 시책 및 추진방향

- 고품질 생산, 구조개선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원
  - 신규 과원조성 등 구조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지원배제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조직참여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정착을 뒷받침
  - 일정 면적이상의 과수(시설)재배 농가(조직)로 경영·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자구의지가 강한 농가(조직)에 대하여 지원
  - 농업인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업효과 극대화

##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 4. 사업시행 요령

### 가. 지원대상자

- 경영능력과 기술을 보유하여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 종합자금지원시스템에 의해 지원 적합한 농업인으로서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자

## 나. 대상자 선정

### <선정 순위>

- 1 순위 : 신규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와 의무 출하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또는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의 산지유통센터를 이용하는 농업인
- 2 순위 : 수출, 친환경생산단지(IFP, IPM, INM, GAP), 과실계약출하사업, 과수재해보험 중 2개이상 참여 또는 가입한 농가(조직)
- 3 순위 : 위 사업 중 1개 사업 참여 농가(조직)

### < 지원대상자 선정시 준수사항 >

- ① 대상자 선정 순위를 지킬 것
    - 생산량 대비 출하량 비율을 우선기준으로 판단
  - ② 대상자의 필요사업량을 나누어 지원하지 말 것
    - 예) A,B 농업인이 각각 소유한 500평의 포도과원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각각 500평을 신청 ⇒ A,B 농가에 각각 300평씩 나눠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선순위가 빠른 농업인에게 필요사업량 500평을 모두 지원(나머지 농가는 차기 지원)
- ※ 상기 사항은 감사 및 사업평가지 중점 점검사항임

### <요건 확인>

- 관련기관 또는 농업인으로부터 계약체결, 이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신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향후 이용할 경우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할 운영조직 주체로부터 향후 출하계약 동의서 또는 가계약서 등 출하계약에 준하는 서류를 통보받아 확인

## 다. 지원사업(시설 및 장비)의 종류

- 고품질생산 : 우량품종 갱신, 키 낮은 사과원 갱신, 지주시설, 비가림 시설,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등
- 생산비,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재해예방 : 방풍시설, 조수방제시설, 관수시설
-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 기 타 : 시설포도, 시설과채류(권역별 거점APC를 이용할 시설과채류에 한함)의 시설 개보수 등



**[ 예시사업 ]**

- 우량품종갱신,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방풍시설, 키낮은사과원, 지주시설, 시설포도·시설과채류의 시설개보수 등

**[ 지원제외 대상 ]**

- ①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등)
- ② 농기계(트랙터, 포크레인, SS분무기 등)
- ③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 ④ 포도·감귤의 난방시설
- ⑤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 ⑥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라. 지원조건**

- 보조 50%(국고 25, 지방비 25), 용자 30, 자부담 20
  - 국고용자 상환조건 : 연리 3.0%,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용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마.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사업별	단 가	지원기준
○ 우량품종갱신	5,000천원/ha	○ 종자산업법에 의한 규격묘에 한함 (포도는 접목묘에 한함)
○ 키 낮은 사과원갱신	39,000천원/ha	
○ 배 지주시설 설치	13,000천원/ha	○ 기존과원의 갱신만 가능(신규불가) 종자산업법에 의한 규격묘에 한함
○ 포도 비가림시설 설치		
- 소립계	9,000천원/600평	○ 비가림시설(가온가능시설 설치 제외)
- 대립계	16,000천원/600평	
○ 감귤하우스생산시설설치	32,000천원/600평	○ 비가림시설 ○ 관수시설, 배수시설 설치 ○ 방풍시설 설치 ○ 친환경 안전과실 생산시설 및 자재 등
○ 복숭아 등 관수시설설치	5,000천원/ha	
○ 참다래 방풍시설 설치	45,000천원/ha	
○ 기타 고품질생산		

※ 시설과채류 등 기타사업 :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사업단가 적용

## [ 지원단가의 조정 절차 ]

- “붙임” 세부사업별 단가는 “예시기준”이므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표준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단가 조정시에는 행정·지도·농협·농가대표·관계전문가 등으로 “사업비 단가 조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조정된 단가를 적용

## 바. 사업추진 주의사항

- 우량묘목갱신, 키낮은사과원갱신 등 공급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규격묘 이어야 하고, 식재 후 바이러스·바이로이드 등 잠복병해충·다른 품종 등 묘목이 문제가 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는 계약서를 공급자와 농가(조직)가 시장·군수 입회하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폐업보상 대상 품목의 경우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이 가능하나 생산시설현대화 사업비를 지원받은 후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에서 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한 보조금을 차감하고 지급해야 함으로 폐업지원사업기간(2008년까지) 동안 별도관리

<붙임>

세부 사업별 단가(예시)

□ 품종갱신

(단위 : 천원/ha)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배 5,642	* 포도 11,300, 단감 6,620, 감귤 11,840
노목제거	1,160	○ 노목제거 등 (여자 4명×3일×30,000원)+ (남자 4명×4일×50,000원)
재식준비	1,250	○ (굴삭기 1대×3일×350,000원)+(남자 4명×1일×50,000원)
비료시용	1,830	○ (퇴비 20톤, 석회 1톤 등 1,510,000원)+ (남자 4명×1일×50,000원)+(여자 4명×1일×30,000원)
묘목심기	배 1,402 (포도 7,060, 단감 2,380, 감귤 7,600)	○ (배 묘목 167주×6,000원)+(남자 4명×2일×50,000원) * 포도 1,110주, 단감 330주, 감귤 1,200주

※ 묘목은 기존품종이 아닌 신품종으로 갱신하여야 하며, 포도는 접목묘에 한함.

□ 키 낮은 사과원 갱신(3.5×1.5m, 1,900주)

(단위 : 천원/ha)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39,084	
준 비	기존나무굴취	625	○ 굴삭기 1대×1.5일×350,000원 ○ 전기톱특수인부 1인×1일×100,000원
토 양 개 량	퇴비, 비료대	3,708	○ (퇴비50톤×53,400원)+(용성인비 3,000kg×146원)+(석회 4,000kg×150원)
토양정지 및 압거배수	장 비 대	2,100	○ 굴삭기 1대×6일×350,000원
	유 공 관 대	2,025	○ 2,700m×750원
	차 광 망 대	612	○ 2,700m×227원
	수관하부 PP피복	1,311	○ 19롤×6,900원
토 양 안 정	목 초 대	183	○ 수단그라스 50kg×3,650원
재 식	묘 목 대	12,350	○ (묘목 1,900주×6,000원)+(수분수 190주×5,000원)
	재 식 비	600	○ 12명×50,000원
지 주 설 치	지 주 대	11,569	○ 378개×30,600원
관 수 시 설	자동관수(관비)	4,001	○ (5,400m×278원)+(콘트롤장치 1세트 2,500,000원)

※ 식재주수에 따라 조정

□ 배 지주시설 설치

(단위 : 천원/ha)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b>합 계</b>	<b>13,571</b>	
구석지주	256	○ 백관(75mm×3.65T×2.35m)16개×16,000원
갓 지주	600	○ 백관(48mm×3.65T×2.35m)50개×12,000원
중 주	3,120	○ 백관(48mm×3.65T×2.00m)260개×12,000원
와이어	2,300	○ 1/4인치, 5롤(1,620m)×460,000원
와이어크립	65	○ 540개×120원
철 선(스텐)	3,870	○ 86롤×45,000원
당 김 돌	378	○ 철근 54개(25mm×2.1m)×7,000원
당 김 돌	810	○ 철근 135개(25mm×1.7m)×6,000원
적 벽 돌	324	○ 324개(19cm×9cm×5.5cm)×1,000원
반 침 돌	48	○ 16개(30cm×30cm)×3,000원
인 건 비	1,800	○ 6명×6일×50,000원

□ 포도 고품질생산시설(소립계 비가림시설)

(단위 : 천원/600평)

구 분	금 액	규 격	산 출 내 역	비 고
<b>합 계</b>	<b>9,660</b>			
기 초 석	1,904	Ø200×500	○ 238개×8,000원	
농원용파이프	565	Ø32×1.5t	○ 595m×950원	
농원용파이프	1,117	Ø25×1.5t	○ 1,489m×750원	
농원용파이프	1,338	Ø25×1.2t	○ 2,058m×650원	
강 선	704	Ø5	○ 2,345m×300원	
U클램프	452	Ø32	○ 532개×850원	
조 리 개	60	Ø25	○ 1,190개×50원	
연 결 편	51	Ø25	○ 343개×150원	
고 정 구	38	Ø32	○ 238개×160원	
장수필름	287	0.05×250×50m	○ 14롤×20,500원	
비닐클립	114	Ø25	○ 1,904개×60원	
피 스 못	30		○ 5봉지×6,000원	
설 치 비	3,000	철골공	○ 60인×50,000원	

□ 포도 고품질생산시설(대립계 비가림시설)

(단위 : 천원/600평)

품 명	금 액	규 격	산 출 내 역	비 고
<b>합 계</b>	<b>16,605</b>			
기 초 석	1,632	Ø200×500	○ 204개×8,000원	
백관파이프	3,043	Ø48×2.1t	○ 1,790m×1,700원	
농원용파이프	2,308	Ø25×1.5t	○ 3,078m×750원	
농원용파이프	1,170	Ø25×1.2t	○ 1,800m×650원	
T클램프	184	Ø48	○ 204개×900원	
U클램프	184	Ø48	○ 204개×900원	
연동꽃이	1,026	Ø48×25	○ 684개×1,500원	
조 리 개	103	Ø25	○ 2,052개×50원	
비닐패드	330	0.7t×6m	○ 118개×2,800원	
물 받 이	2,020	0.45t×600	○ 561m×3,600원	
연 결 편	106	Ø48	○ 213개×500원	
연 결 편	27	Ø25	○ 180개×150원	
패 드 편	4		○ 118개×30원	
새들고정구	7	Ø25	○ 72개×100원	
밴드고정구	360	Ø25	○ 720개×500원	
장수필름	890	0.1×450×50m	○ 12롤×74,200원	
비닐클립	121	Ø25	○ 2,016개×60원	
패드필름	90	0.125	○ 6롤×15,000원	
설 치 비	3,000	철골공	○ 60인×50,000원	

□ 감골고품질생산기술(비가림)

(단위 : 천원/600평)

구 분	금 액	규 격	산 출 내 역	비 고
<b>합 계</b>	<b>32,984</b>			
가설공사	101	평 귀	○ 30개소×3,373원	재료비
	53		○ 10개소×5,304원	인건비
	400		○ 8인×50,000원	
소 계	554			
토목공사	249	m <sup>3</sup>	○ 터파기 192×1300원	재료비
	250	m <sup>3</sup>	○ 되메우기 100×2500원	인건비
	125	m <sup>3</sup>	○ 지면정리 50×2500원	
	1,000		○ 20인×50,000원	
소 계	1,624			
콘크리트공사	805	m <sup>2</sup>	○ 합판거푸짚 150×5,368원	재료비
	750	m <sup>3</sup>	○ 레미콘 10×75,000원	인건비
	400		○ 8인×50,000원	
소 계	1,955			
골조공사	4,350	50A	○ 주기둥 294본×14,796원	재료비
	7,236	40A	○ 주서가래 520본×13,916원	인건비
	2,441	Ø15.9	○ 보조서가래 651본×3,750원	
	4,570	25A	○ 횡대 546본×8,370원	
	1,450	600×25	○ 물흙 20롤×72,500원	
	1,350		○ 패트 500본×2,700원	
	2,000		○ 40인×50,000원	
소 계	23,397			
관수시설	197	50A	○ PE관 80m×2,470원	재료비
	875	30A	○ PE관 500m×1,750원	인건비
	140	L231T	○ 노즐 200개×700원	
	540		○ 발브외 9점×300개×200원	
	500		○ 10인×50,000원	
소 계	2,252			
피복공사	1,600	3.2×0.1	○ 비닐 10롤×160,000원	재료비
	500		○ 망 10롤×50,000원	인건비
	102		○ 부속재료 102,000원	
	1,000		○ 20인×50,000원	
소 계	3,202			



□ 복숭아 등 배수·관수(관비)시설

○ 배수시설

(단위 : 천원/ha)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5,703	
유 공 관	1,245	○ 1,660m×750원
차 광 망	378	○ 1,660m×228원
장비사용	2,800	○ 굴삭기 2대×4일×350,000원
인 건 비	1,280	○ (남4명×4일×50,000원)+(여4명×4일×30,000원)

○ 관수(관비)시설

(단위 : 천원/ha)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5,175	
메 인 관	2,500	○ (100m×50m)=2,500천원
점적라인	2,025	○ 1,350m×1,500원
장비사용	350	○ 굴삭기 1대×1일×350,000원
인 건 비	300	○ 남자 2명×3일×50,000원

□ 참다래 방풍시설

(단위 : 천원/ha)

구 분	금 액	규 격	산 출 내 역	비 고
합 계	12,840			
주 위 주	1,183	Ø48.1×2.3×6m	○ 71개×16,660원	
지 주 대	1,599	Ø48.1×2.1×6m	○ 96개×16,660원	
지주받침대	824	Ø48.1×2.1×1.5m	○ 192개×4,290원	
크 램 프	839	Ø48×Ø48	○ 693개×1,210원	
주위주상부캡	687	Ø48	○ 71개×9,680원	
지지철근	89	D22×1.5	○ 23개×3,850원	
와 이 어	350	5mm	○ 1,750m×200원	
와 이 어	690	2.8mm	○ 5,750m×120원	
와이어크립	36	5mm	○ 296개×120원	
방 풍 망	1,493	0.5×0.5×5×100m	○ 4.6롤×324,500원	
소모자재	550	1식	○ 1식×550,000원	
설 치 비	4,500	철골공	○ 90인×50,000원	

### 1. 목 적

-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과수수출단지 정비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실 생산 거점으로 육성 지원

###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를 우선 추진하여 과수 생산거점으로 육성
- 과수산업육성대책, 농촌마을개발사업, 원예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 등과 병행 실시하여 효율제고
- 지역 여건, 농업인 수요에 따라 개발 유형을 달리하여 사업비 차등 지원
- 품목별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정착

###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 농촌정비법 제5조 내지 제12조, 제89조, 제90조, 제94조, 제97조

### 4. 사업시행 개요

#### 가. 사업내용

- 용수원 개발 : 과수단지 관개용수 개발(암반관정, 양수장 등)
  - 용수이용 시설 : 저수조 및 송·급수관 설치
- 경작로 정비 : 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 등
- 과원경지 정리 : 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 나. 지원기준

- 지원비율 : 보조 100%(국고 80, 지방비 20)
- 지원단가 : 25,410천원/ha(기본조사비 : 419천원/ha, 국고보조 100%)
  - 개발유형에 따라 단가 차등 : 90~110%, 산지는 지원단가 보다 최고 30%까지 지원

### <개발유형>

- I 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중 단일공종 사업
- II 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농로개설, 과원경지정리+용수개발
- III 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과원경지정리 사업

### 다. 지원대상

- 과수주산지중 집단화된 지구로 개소당 사업규모가 50ha이상(최소 30ha이상)인 지구
- 1단계 : 과실전문생산(수출) 단지 (현재 49개 단지 지정)
- 2단계 : 30ha이상 과수주산지 지구

### 라. 사업시행

- 연차사업과 당해연도 완료사업으로 구분 시행(당해년도 사업마무리 가능)
- 1년차(착수) : 사업계획 선정, 기본조사·설계, 공사발주 및 계약, 공사시행
- 2단계(마무리) : 공사완료

### 마.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시·도 : 농정국 농업기반과(농정과, 농축산과, 농산지원과, 기반조성과, 농지개발과 등)
- 시·군 : 건설과(협조 : 과수생산유통관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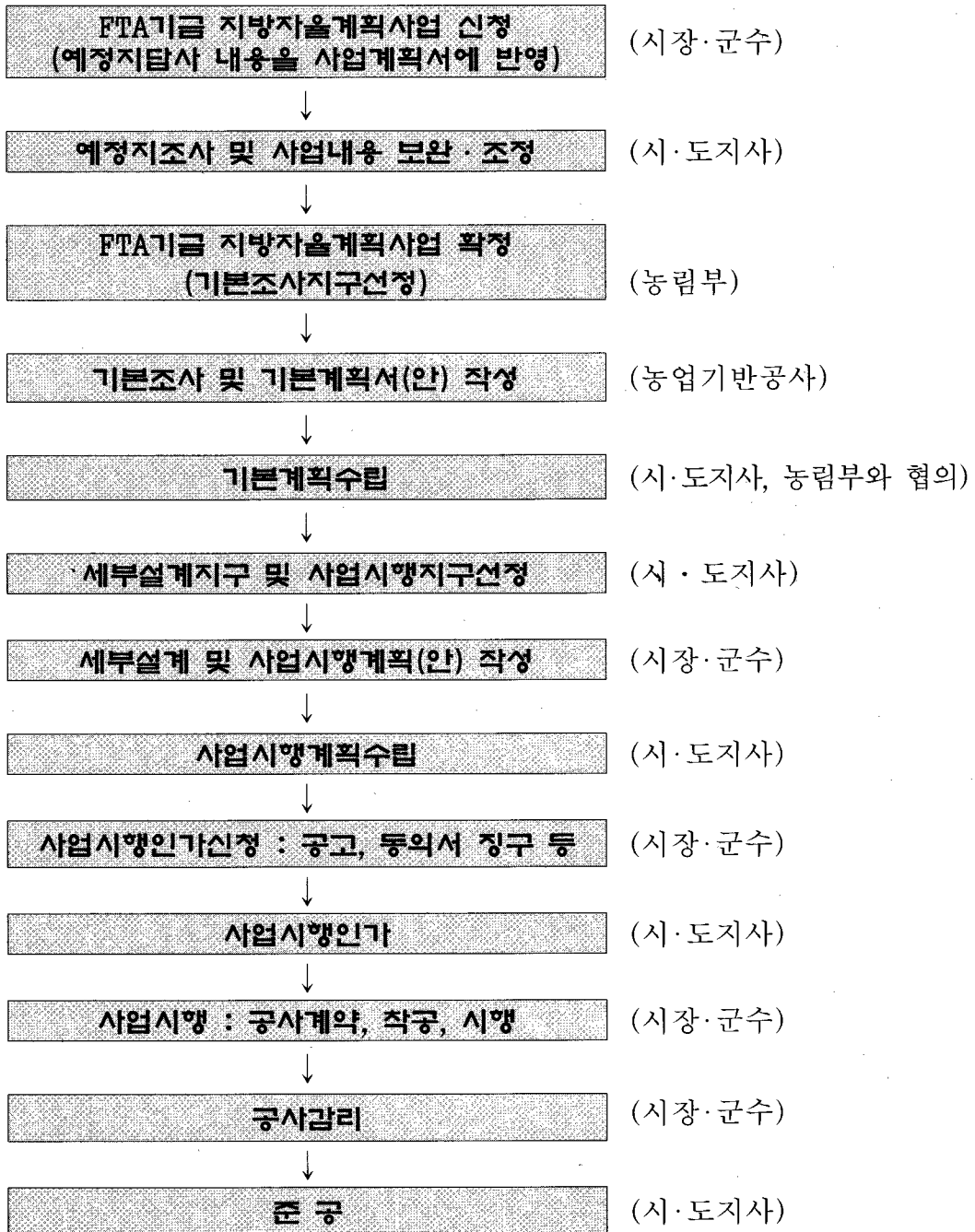
### 바.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 ※ 주 관개 용수원이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양수장 등 시설일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사. 사업 추진 절차

- 사업계획신청 → 예정지 조사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세부설계 지구 및 사업시행지구 선정 →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인가 → 공사발주 및 계약 → 공사시행 → 준공

## 과실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도



※ 주 관 개 용수원이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양수장 등 시설일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5. 사업대상지구 선정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30ha이상)된 과수재배 주산단지 정비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구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이 잘되고 있는 지구
-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사업완료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FTA기금 과수산업육성대책 등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지구
- 마을도로 위주개발, 생활용수개발 목적으로 관정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택 단지, 공단 등 타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 6. 사업계획수립 · 시행

### 가. 사업추진일정

#### < 2004년도 사업 >

○ 사업추진절차에 따라 신속히 추진

추진단계	주요내용	추진일정	관련기관	부속서류
1. 사업계획 선정	• 기본조사지구선정	7월말	농 립 부	
2. 기본계획의 수립	• 기본조사 및 기본 계획서 (안) 작성	8월	시 · 도지사 농업기반공사 농림부(협의)	• 기본조사보고서
3.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법 제7조,13조)	•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작성 및 심의	8~9월	시 · 도지사	•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
4. 사업시행계획 수립 (농어촌정비법 제8조)	• 세부설계 실시 • 세부설계 확정 및 시행계획 수립	9월중	시 · 도지사 ⇒사업시행자(통보)	• 세부설계 도서
5. 사업시행계획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10조)	• 공고문 작성 및 공고 • 동의서 징구 • 이의신청 접수 • 재정신청 (이의신청이있을시)	10월중 ※이의신청시 공고일로부터 75일 소요	사업시행자	• 용지매수조서 및 수해면적조서 • 별도서식
6.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2조)	• 사업시행인가 신청 • 사업시행인가	11월중	사업시행자 신청 ⇒도지사 인가 ⇒사업시행자(통보) ⇒농림부보고 ⇒도지사 인가 고시	• 사업시행계획서 • 공정계획서 • 동의서 사본 • 공고문 사본 • 재정결과 (신청이있을 경우)
7. 공사발주 (국가계약법령)	• 공사발주 요청 • 입찰공고 • 계약	11월중		• 예정가격 • 입찰내역서 • 시방서 등 부속서류
8. 공사착공	• 입찰내역서 검토 • 공사착공	12월		

< 2005년도 사업 >

업무내용	시행기관	완료기한	업무내용	시행기관	완료기한
○사업예정지답사	시장·군수	'04. 6월중	○지하수영향조사	시장·군수	즉시
○예정지 조사·보완	시·도지사	'04. 7월중	○세부설계실시 및 시행계획 작성	시장·군수	'05.6월까지
○지방자율계획사업 확정	장관	'04. 10월중	○사업시행인가보고	"	'05.8월까지
○기본조사 및 기본 계획서(안) 작성	농업기반공사	'04.12월까지	○공사발주	시장·군수	인가즉시
○기본계획수립	시·도지사	'05.1월까지	○추진상황보고	시·도지사	매분기말 익월10일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대상지구 선정	시·도지사	'05.2월까지	○준공결과보고	시·도지사	즉시

**나.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1) 과실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별 추진위원회 및 유지관리 조직 구성

- 사업시행자는 지구별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시·군), 농업인대표, 농업기반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함
  - 사업계획내용 검토 및 시설, 영농관리 등 책임부여
- 사업시행자는 관정을 개발할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설물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2) 영농기술지도 강화

- 사업시행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토록 하여 영농기술지도를 강화하여야 함

(3) 용수원 개발 및 용수이용시설

- 용수원 개발
  -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개발된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신규개발
  - 용수원개발은 지표수 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지표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지하수 등 다른 용수원을 검토



- 용수원 개발시에는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토록 조치
- 암반관정의 1일 채수량은 150톤/공 이상으로 하며, 착정심도는 소요수량 확보가 가능한 적정심도까지 개발
- 다만, 지하수의 부존량이 적은 산간, 해안 또는 도서지역 등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1일 채수량 100톤/공까지 조정시행 가능
- 관정 개발시에는 사업비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공당 채수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으로 급수면적을 늘리므로써 개발 공수를 최소화
- 시추조사는 적정심도까지 1공을 시행하며, 시추조사 실패시는 1공을 추가 시행
- 시설농업의 양액 재배용수나 음용수를 겸하는 용수는 수질검사를 엄격히 실시
- 관정에 사용되는 자재는 반드시 KS규격의 자재를 사용
- 저수조와 수혜 농경지의 표고차에 의하여 과도한 수압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압 저감방안 마련

○ 용수이용시설

- 수원공에서 저수조까지의 송수관로는 내수압 등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며,
- 저수조에서 경작지까지의 급수관로는 수압, 구경,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적정재질의 관을 사용하고, 농업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장소에 분수공을 설치토록 계획.
- 급수시설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미터기를 설치토록 계획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sprinkler) 또는 물방울관개(Drip irrigation) 실시 희망 여부를 조사하고, 살수 관개 또는 물방울관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정수압이 유지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

- 기타 관개계획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관개편(1998.12 농림부)의 과원관개 분야 계획설계기준에 따라 조사설계하여 계획수립

(4) 경작로 정비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에서부터 경작지까지의 연결도로인 진입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포장공법으로 확·포장

- 농기계 통행 등 작물재배에 주로 이용되는 경작농로는 진입로와 연계하여 정비
  -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 상위도로의 확·포장이 안된 지역은 관련 부서와 사업시행시기를 협의하여 연계 추진
- 배수계획
  - 가능한 한 자연 배수토록 계획하고, 배수로에 낙차공, 침사지, 사방댐 등의 구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준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

#### 다. 사업신청 및 예정지조사

- (1) 품목조직의 장은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할 수 있음
- (2) 시장·군수는 사업 예정지가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및 30ha이상 과수재배 주산단지 여부를 확인하고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추진사업 신청에 포함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
- (3)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시에는 아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함
  - 과실전문(수출)단지 포함여부와 품목별 생산자 조직구성 또는 계획여부
  -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
  - 특히 재배작물 여건상 용수량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의 경우에는 용수개발을 지양하고, 농로정비 등 필요한 공종만으로 계획
  -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마을회의 등을 통하여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토록 할 것이며, 주민이 사업을 희망하는 지구에 한하여 사업예정지구로 선정
- (4)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5)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한 내용중 위 (3)항의 조사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FTA기금 지방자율추진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 '04년도 사업대상 지구는 사업추진일정상 시·군과 시·도가 협의하여 예정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율추진사업계획서에 첨부

## 라.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 농업기반공사가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서(안)을 수립하고(별지 제2-2호 서식 참조), 이를 근거로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수립에 전문기술을 필요로 할 때에는 기술용역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때 소요되는 기술용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함
- 전문기술이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정지조사서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기본계획서(안)을 수립할시 시장·군수의 예정지 답사 및 시·도지사의 예정지 조사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계획수립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함과(별지 제2-2호 서식) 동시에 시·군에도 통보

(2)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시·도지사의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기본조사 실시

(3) 기본조사자(농업기반공사 사장, 이하 생략)는 타법·타사업관련 여부, 주민호응도, 현지 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토록 할 것이며,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4) 기본조사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 (5) 기본조사자는 품목재배 등에 관한 농업기술센터의 의견과 기본조사내용에 대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본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함
- (6) 기본조사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품목별 주산(특산)단지 면적 및 연간소득
  - 작부체계 및 농업인의 재배품목 전환 가능성
  - 경사도, 재배품목, 경지이용형태 등 지역입지여건에 맞는 토양유실방지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 진입·경작로 개설계획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용수공급계획
    - 원칙적으로 저수지, 양수장, 농촌·농업생활용수 공급용 암반관정, 기타시설 등 기존 수원공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선검토하고, 기존 수원공 활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암반관정 등으로 용수개발계획을 수립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sprinkler) 또는 물방울관개(drip irrigation) 실시 희망여부
  - 과수산업육성대책, 농촌마을개발사업, 원예특작생산지원 등 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여부
  - 품목별 생산자단체 조직 현황
  - 농산물의 규격상품 출하 여부
  - 유통체계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비용부담 방안, 기타 수혜민들이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여야 할 사항 등을 수혜민 대표 등과 협의하여 제시
- (7)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농림부 장관과 협의를 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기본계획 확정시 미비사항이 있으면 농림부장관은 기본조사자에게 미비사항을 보완토록 할 수 있으며, 기본조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8) 시·도지사는 지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면 기본계획서를 농림부, 시·군, 기본조사자에게 송부함

#### 마.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 (1)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대상지구를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시달함
- (2)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97조 및 동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함.
- (3)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이해 당사자 등과 협의하여야 함
- (4) 세부설계자는 세부설계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용수개발계획, 개발유형, 유지관리 조직 구성 등 유지관리계획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와 사전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 (5) 세부설계자는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가구당 부담액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 (6) 기본조사결과 지하수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세부설계와 병행하여 지하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되 아래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하수 부존량 평가를 위한 지질조사, 물리탐사(원격탐사포함), 시추조사 등의 지하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업무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지하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지하수개발은 지하수법 제22조 및 제33조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을 필한 업체중에서 선정하여 개발토록 함
    - 지하수개발은 개발단계에서 가뭄 등 비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반기중에 착정을 완료토록 함
  - 관정 시추결과 채수량 부족 등으로 부적합한 시추공에 대하여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폐공처리)하여야 함
    - 다만, 지역주민이 비상시 용수로서 활용코자 존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주민에게 인계할 수 있음
      - 이 때 시장·군수는 주민들이 지하수법에서 정하는 허가 또는 신고,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준공신고 등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후 관정이 불필요하여 활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 폐공처리 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 주민에게 인계함
  - 시장·군수로부터 지하수 기초조사 및 개발에 대한 위탁을 받은 자는 지구별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추공의 위치, 심도, 채수량, 안정수위 등 세부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 세부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지하수개발 결과를 토대로 암반관정 및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한 세부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 (7) 세부설계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타사업과의 연계추진방안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지하수 이용시설의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 취약부분에 대한 동파 방지대책
  - 토양침식 및 토사유출 저감 시설물 설치 계획
  - 수도미터기 설치계획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물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비용부담 방안, 기타 수혜민들이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여야 할 사항(수혜민들과 협의)
  - 기타 기본조사내용의 확인 및 여건변화사항 조정
- (8)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시·도지사는 경제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며, 세부설계 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토록 하여야 함
- 특히 용수개발계획 및 개발유형의 적정성, 주민들의 과원 관정 등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조직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한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9) 사업기간은 사업규모, 지역여건, 재배품목 등에 따라 1~2년으로 설정함
- 관정, 기계, 전기시설, 저수조, 송수 및 급수시설, 농로, 정지 등 공사내용이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2년차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다만, 공종이 단순하고 사업규모가 작은 지구는 착수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 (10)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함
- (11)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하는 측량·설계 요율의 범위내에서 집행함

## 바.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1)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고결과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혜민의 동의서, 준공후 시설의 인수·관리 예정자의 확인서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 (2)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영농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4) 사업시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입찰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 공사추진

- (1)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착공과 동시에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2) 사업비는 개발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사업시행중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함
- (3) 사업시행자는 시공중 현장여건에 따라 시행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사업지구 변경,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여 면적 증감,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10%이상의 공사비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4) 사업관리비는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도서인쇄비, 회의개최비, 출장비 등으로 사용하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한 요율 범위내에서 집행함



- (5) 시공업체는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를 완료할 경우 아래사항에 대하여 수혜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혜민의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설명서를 제작, 비치하여야 함
- 주요시설의 배치상황 및 시설물 사용방법
  -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취약부분에 대한 동파방지 방법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가구당 예상 전기요금 부담액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 방안 등

#### 아. 용지매수 및 보상

- (1) 용지매수는 진입도로, 간선농로 등의 농로와 저수조, 관정 등의 공공시설 부지는 매수할 수 있으나, 예산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비 등 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 (2)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 보상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함

#### 자. 공사감리

- (1)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나, 다양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공종임을 감안, 농업기반공사 등 전문기관의 위탁시행을 원칙으로 함
- 일반용역업체에 위탁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농업토목 전문기술자는 물론 전기, 기계, 지하수 등의 전문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 감리할 수 있도록 조치함
- (2)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감리비는
- 감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특수기술부분 위탁감리비, 특수시험 위탁비를 실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공사감리 요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사감리 직원의 인건비, 자산취득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차. 준공검사

-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 시공업자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수혜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시설물 사용설명서 비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수혜민들의 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준공검사시 수혜민을 참여시킬 수 있음
  -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 지적사항 시정내용,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민에게 실시한 교육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조직 구성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2)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준공검사시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수혜민 교육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행토록 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함
- (3) 시·도지사는 준공검사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4)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농업기반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전문검사기술을 가진자가 당해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됨
- (5) 시장·군수는 사업이 준공되면 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함

## 카. 사후관리

- 완공된 관정 등 시설물에 대한 완공년월일, 채수량, 안정수위와 기타시설에 대한 준공사진이 첨부된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동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함
  - 과원기반정비 시설 등록은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지 제2-7호 서식을 이용하여 “과수기반시설”로 등록
- 시·도지사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동 시행령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등 동 사업으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토록 지도하며,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를 적립토록 하고, 전기료 등의 이용비용을 자체 부담토록 지도함
    - ※ 관리조직(수리계)의 자체규약 : 농림부 시설51350-10543(2000.11.8)의 붙임 3과 과원기반정비사업 우수사례집(2000년, 농림부)의 “과원기반정비 시설물 유지관리계(수리계)구성 및 운영계획(시안)” 참조
  - 수리계를 조직·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직접 농업기반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시설물 활용 및 유지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이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고소득 작물 재배에 관한 영농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조치하여야 함
- 암반관정 개발지구에 대하여는 소형관정개발을 지양함
- 수질검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용도별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타. 기 타

- 환지업무는 경지정리사업 지침을 준용함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지하수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름.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결과**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순위	Code No	지구명	위치		수혜면적			소요비		단지구분	개발유형	필요시설						실문생(수출)단지정부	품목별생산단체조직여부	경사도	토지소유자	주민호용도	비고		
			시·군	읍·면	계	진	비진	총사업비	ha당			수원공				진입로	경작로							용수로	정지
												저수지	양수장	관정	기타										
	합계				ha	ha	ha								m	m	m	ha	명		%	명	%		

- ※ ○ Code-No는 행정처리를 위한 고유번호임
- 수혜면적은 용수공급 및 도로 등 기반정비사업의 혜택을 받는 실경지면적임
- 단지구분은 과수중 대표 재배품목을 기재
- 개발유형은 지역여건 및 재배품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I 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중 단일공종 사업
  - II 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농로개설, 과원경지정리+용수개발
  - III 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과원경지정리 사업
- 수원공에서 양수장 및 관정은 신규설치, 기설활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 비고란에는 연계 및 병행개발사업명, 국고차등보조제에 따른 보조율, 기타 사업계획 검토시 중요한 사항 기재

## 지구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예정지조사결과

(Code No :                    )

**□ 사업지구 현황**

- 위 치 :        도        시        읍면        리
- 면 적 :        ha(진흥 :        , 비진흥        )
- 토지소유자 수 :        명
- 경사도 :        %
- 한수해 상황

(면적 : ha, 금액 : 백만원)

구 분	피해연도	피해면적	피해액	비고
○ 한 해				
○ 수 해				

○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지정 현황

품 목				
단 지 명				

○ 주요 재배품목

재배품목				
구성비율(%)				

○ 품목별 생산자 단체 조직 현황 :

○ 현재 이용중인 용수공급시설현황

- 소형관정 :        개소(    HP), 암반관정 :        개소(    HP)
- 양 수 장 :        개소(    HP ×    mm ×    대)
- 저 수 지 :
- 보        :
- 기        타 :

## □ 사업계획개요

### ○ 주요사업

#### - 수원공

- 지하수 개발 : 암반관정 개소
- 지표수 개발 : 양수장 개소, 보설치, 계곡수 이용 등
- 기 개발된 시설 이용 : 암반관정 개소, 소형관정 개소  
저수지, 양수장, 보 등으로 기재
- 작물재배 여건상 관개용수개발 불필요 : ha

#### - 도로정비 : m

- 진입도로 : m(기존도로 폭 : m), · 경작로 : m(기존도로 폭 m)

#### - 용수로 : m

#### - 정 지 : ha

### ○ 개발유형 :

### ○ 추정사업비 : 백만원(ha당 : 천원)

### ○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 추정액

#### - 전기사용예상 기간 : 월 ~ 월 (개월)

#### -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액 : 원(월평균 : 원)

※ 사업예정지 위치도(1 : 25,000) 첨부할 것

## □ 주민호응도

### ○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혜민이 부담하고, 수리계(유지관리조직)를 구성하여야 함을 알렸는지 여부 : 여, 부

### ○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전예치제 도입에 대한 주민호응도

#### - 찬성 : %, 반대 : %

### ○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호응도

#### - 찬성 : %, 반대 : %

병행 가능사업

○ 사업명 :

- 추진상황

○ 기타

사업시행상 문제점

사업시행예정자 의견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결과 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순위	Code 1 No	지구명	위치		수해면적			소요사업비		단지구분	개발유형	필요시설					토지소유자	지방비부담력
			시·군	읍·면	계	진홍	비진홍	총사업비	ha당			수원공	관정	진입로	경작로	용수로		
					ha	ha	ha		천원			개소	m	m	m	ha	명	

연계병행가능사업				주민 호응도	과실전문 생산(수출) 단지 지정여부	품목별 생산자단체 조직여부	사업지원 협의회 운영여부	사업시행 에 따른 예상 문제점	비고
사업명	관련 기관	예산 확보 여부	관련기관과 협의 내용						

< 작성요령 >

- 단지구분 : 과수중 사과, 배, 감귤 등 재배품목으로 기입,
- 지방비부담력 : 가능, 불가능으로 기입하고, 가능시 지방비 부담비율을 기입
- 예산확보여부 : 예산이 확보된 경우 예산액을 기입하고, 과원기반정비가 끝난후 별도 추진하는 경우 그 시행년도를 기입
- 주민 호응도 : 양호(90%이상 동의), 보통(67%이상 동의), 불량(67%미만 동의) 등으로 기입
- 비고란에는 과수산업육성대책,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등 연계사업 표기



[ 별지 제2-3호 서식 ]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세부설계 및 시행인가 결과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 순위	지구 명	위 치		수해 면적 ha	개발 유형	총사업비			착수년도			완공년도			인 가 연월일	비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 비고란에는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농촌마을개발사업 등과 연계사업 지구는 연계사업명, 국고 차등보조율 등을 표기

※ 기본계획과 수해면적, 시행공종이 변경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와 협의후 인가

[ 별지 제2-4호 서식 ]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입찰상황 보고**

지 구 명	위 치		사업시행자	사업 량	총사업비	설계가격 (A)	예정가격 (B)	낙찰가격 (C)	낙찰율 (%)		입찰일 자	입찰방 법	응찰회사 수	낙찰자			계약사항			공사감 독자	비 고	
	시군	읍면							C/A	C/B				소재지	회사명	대표자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 별지 제2-5호 서식 ]

###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 보고

○ ○ 도

(금액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면적 ha	총사업비	2004계획			주요공종	추진실적		사 업 시 행 자	비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실형액	%		

[ 별지 제2-6호 서식 ]

###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준공결과 보고

○ ○ 도

지 구 명	위 치		수 혜 면 적	지역구분		재 배 품 목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시· 군	읍· 면		진 홍	비 진 홍	사 과	배	감 귤	기 타	계	국고	지방비	수 원 관 공 정 △ ▽	진 입 로	경 작 로	송 급 수 관	정 지
			ha	ha	ha	ha	ha	ha	ha				개소	m	m	m	ha

[ 별지 제2-7호 서식 ]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시설물 대장

코드번호 :	지구명 :	위 치 :	도	군	면	리	관리자 :
사							
진							
○ 주요 공사내용							
- 경 작 로 : km							
· 진 입 로 : 조 m(노폭 m, 포장 m)							
· 경 작 로 : 조 m(노폭 m, 포장 m)							
- 수 원 공 : 개소							
· 관 정 : 공(구경 : mm, 평균심도 : m, 양수량 : m <sup>3</sup> /일)							
· 양 수 장 : Hp× mm× 대, 양수량 : m <sup>3</sup> /sec							
- 용 수 로 : 조 m(송수관로 m, 급수관로 m)							
- 과원경지정리 : ha							
○ 공 사 기 간 : . . . . ~ . . . .							
○ 사 업 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 시 공 회 사 :							
○ 공 사 감 리 :							
○ 기타 특기사항							

※ 관정시설 재원은 이면

( 후 면 )

관 정 시 설 재 원

구 분	단위	1번공	2번공	3번공	4번공	5번공
구 경	mm					
심 도	m					
채수가능량	m <sup>3</sup> /일					
양 수 량	m					
우물파이프	m					
우물유공관	m					
자 연 수 위	m					
안 정 수 위	m					
수중모타펌프	Hp					
제 품 명						
설 치 심 도	m					
양 수 장 옥	m <sup>2</sup>					
저 수 조	m <sup>3</sup>					
( 재 질 )						
송 수 관	m					
( 재 질 )						

### 1. 목 적

- 국내 과수농가의 영세성에 비해 구입비용이 과다한 과수전용 농기계의 임대를 통해 농가들의 구입비 부담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

###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수전문생산(수출)단지 또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업생산비절감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지원
- 영농조건 불리지역 및 영세소농의 공동이용을 적극 추진
- 내구연한 경과 후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 사업의 지속성 유지

### 3.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 4. 사업시행요령

#### 가. 지원대상자

- 과수주산지역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지자체 등

#### 나. 지원내용

- 대상농기계 : 잔가지파쇄기, 과수인공교배기, 동력제초기, 퇴비살포기, 트랙터, 스피드스프레이어 등 구입가격이 3백만원 이상이고, 내구성이 있는 과실생산관련 농기계
- 부속시설 설치 : 농기계보관창고 및 간이수리시설

#### 다.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규모 : 1개소당 500백만원(부속시설 : 총사업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단가 : 농림사업시행지침 제2권 “농기계구입지원사업”의 기종별 기준금액 적용  
- 해당기종의 단가예시가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견적서 등 산출근거를 첨부

## 라. 사업운영주체

- 운영주체 : 농협 및 영농조합 법인대표, 지자체 장
- 주요 기능 : 농기계구입, 농기계임대, 임대료 징수 및 관리, 사후관리 등

## 마. 사업신청

- 사업희망자는 과수전용농기계임대사업 신청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세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바. 사업시행 방법

- 과수전용농기계 임대지원사업은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사업자가 구입하려는 농기계를 일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장·군수는 사업운영주체의 농기계구입·임대, 임대료징수, 사후관리 등 임대사업 운영에 대하여 지도·점검
- 시장·군수는 임대농기계관리, 임대사업자 선정, 임대료 결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농기계임대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 사업대상자는 구입농기계를 농업인·농업법인 등에게 유상임대 실시
  - 사업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계속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장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 운영
- 내구연한 경과후 임대수입 적립금을 활용하여 대체 농기계를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사업의 계속성 유지
  - 임대사업자는 임대농기계의 망실, 파손,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임대수입금 또는 자체예산으로 사업시작 당시와 같은 수량의 농기계를 1회이상 대체 구입

## 사. 농기계 구입 및 관리

- 과수전용 임대농기계 기종은 내구성이 있고 농가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종중에서 수요자(농가)가 요구하는 기종 및 모델 선택
- 농기계의 규격, 수량, 부속작업기 등은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구입한 농기계는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농기계의 잘 보이는 위치에 다음과 같은 표지 부착

## 과수전용 임대농기계

이 농기계는 FTA 지원대책으로 과수농기계 이용율을 높이고 농가의 구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200 년 월 일

- 규 격 : 가로 12cm × 세로 6cm
- 재 질 : 아크릴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아. 농기계 임대

- 임대기간은 1년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내구연수까지 연장
  - 1년 단위로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임대기간 변경
- 시장·군수 및 임대사업자는 농기계 이용율 제고와 농가부담 경감을 고려하여 작업면적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임대대상자를 선정
- 유사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선 보험가입 의무화
  - 재계약 체결시 또는 만기시에는 반드시 가입·유지여부 확인
- 면세유 공급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

### 자. 임대료 산정

- 임대료는 농기계가격, 내구연수, 임대기간 및 해당지역의 임대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산정하되 선납을 원칙으로 함
- 임대료 적립금을 통해 재구입이 가능하도록 적정임대료 산정 계상

### 차.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연2회 운영실태를 종합 점검·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지원목적대로 사용여부, 고장장비 방치여부, 사후봉사 실태 등 점검
- 사후관리기간은 기종별 내구연한을 준용함
- 사업주관기관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
- 사업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담인력 배치
- 사업자는 별도 계정 등을 통하여 임대료를 관리





( 붙임 )

과수전용농기계임대지원사업 세부계획서

□ 사업지역 일반현황

일반현황	과수재배면적	ha( 평)	호당평균면적	ha( 평)
	참여농가수	호	평균수령	년
	주요과종			
농기계 보유현황	기종	보유대수		비고

□ 농기계 구입계획

구입기종	규격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기타
					* 구입회사명 등 기타 필요 한 사항기재
합계					

□ 부속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규모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고
○ 농기계보관창고	평			
○ 간이수리시설	평			
○				

[ 별지 제3-2호 서식 ]

**과수전용농기계 임대지원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차년도 이월액		불용또는 집행잔액
				계 획				집행실적(정산)						
기종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국고	국고	
			%											

○ 세부명세

구입기종	규 격	수 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기 타
					* 구입회사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합 계					

[ 별지 제3-3호 서식 ]

과수전용농기계 임대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임대실적

(단위 : 대, 호, 천원)

시·군	기종별	수혜농가수	임대료 징수금액	비고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향후 조치계획

4. 기타(우수사례 등)

(참고 1)

### 과수전용농기계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임대사업자)		임차인(임대대상자 또는 농가)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임 대 차 물 건			
농기계명		수 량	대
작업기명		수 량	대
		수 량	대
		수 량	대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임 대 료	원		

### 농 기계 사 용 계 획

기 계 명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	ha (일 평)

###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내에 보관한다.
3. 임대기간중 발생한 고장 수리비 및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임대기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때에는 임차인이 변상책임을 진다.
6.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지체없이 반납한다.
7. 기타사항 :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과수전용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임대사업자) : 시장·군수 (인)  
 임차인(임대대상자 또는 농가) : (인)







# 여 백



## 1. 목 적

- 과수 주산지역에 규모화·현대화 된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Hub)으로 육성하고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
- 선별·저장·포장시설과 상품화시설 등을 일괄지원하여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
  - 농산물의 집하선별·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등 저온유통기반을 구축하여 신선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
  - 농산물을 공동선별함으로써 균일품질의 농산물을 규격포장화하여 상품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
- 농산물 물류효율화와 규모화로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

##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 농업생산 전망, 기존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주산지별로 산지 유통센터 설치
- 기존시설 보완은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을 담당할 산지전문유통조직의 상품화 및 마케팅에 필요한 시설, 기계, 장비 등을 우선 지원하여 산지유통기반 확충
- 소규모 시설 설치는 억제하되, 사업물량 확보 등 유통사업의 규모화(시·군 단위 또는 2개 시·군 이상) 및 기존시설과의 사업연합, 계열화가 가능한 운영주체의 확보를 전제로 공공유형 시설을 지원
  - 생산자단체 콘소시움 등 운영체제 및 상품개발, 마케팅계획, 기존시설과의 경합정도 등 엄정한 사전 사업성 진단을 거쳐 지원하고, 준공 후에는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등 사전·사후관리 강화
  -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공공소유 민간운영” 원칙에 따라 운영자 확정 후 사업신청 및 착수

- 유희 산지유통시설의 활용도 제고 촉진 및 산지유통시설간 사업연합 및 계열화 촉진 유도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신청자격에서 제외

###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 4. 사업시행요령

#### 가. 지원대상자

- 생산자단체 : 품목 전문조합(협동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출자법인
- 지방자치단체

'04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7개소)은 이 지침에 따라 선정된 사업으로 간주함

#### 나. 지원 조건

- 지원비율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 지방비는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시·도 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 공공유형은 완공 후 공공소유를 전제로 지원
  - 일반유형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증액가능), 자부담 50%
- 사업규모(부지구입비 제외) :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시설의 활용, 구조조정 계획을 감안하여 신규시설 인정
  - 기존시설 보완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선별기 설치 : 농진청(원예연구소 및 농업공학연구소),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과수연합회, 산지유통전문가, 품목조합대표 등으로 구성된 기종선정 협의체를 통하여 선정
- 전처리(세척 등) → 선별(중량, 당도, 산도, 색택 등) → 포장 → 파레트 적재 및 랩핑까지 자동일괄처리가 가능한 기종을 설치하되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선별기 선정시 고려 사항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시설에 설치할 선별기는 과종별 선별 항목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당도 오차 0.5brix 이내
2. 산도오차 0.1%이내 (감귤 선별기에 한함)
  - 당도, 산도는 일회의 캘리브레이션으로 다양한 품종 및 여러 지역의 과실을 적용하더라도 상당기간 상기오차 범위내를 재연하여야 함
  - 캘리브레이션은 품종별로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히 전환 가능한 기종
3. 사과는 색깔별, 착색부위 비율별(착색패턴별) 선별이 가능한 기종(육안선별 수준)
4. 선별기 투입 및 이동중 압상 및 상해가 없는 기종(사과, 배, 복숭아)
5. 표면의 흠과 상처 수준별 선별 및 내부의 병과(갈변, 심부병, 물배 등) 선별이 가능한 기종(사과는 밀 병과 갈변 구분이 가능해야 함)
  - 상처과, 상해과의 수준별 정확한 선별(육안선별 수준)
6. 과형 및 중량 선별이 가능한 제품
7. 다양한 소포장이 가능한 제품(비닐팩, 망포장, 종이팩, 다양한 상자포장)
8. 상기조건을 충족하고, 병과, 흠과를 선별해내고, 당도, 과형, 착색, 무게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선별이 가능한 제품
9. 국제수준의 선별 능력을 가진 선별기  
(부대사항)
  1. 투입은 자동투입과 수동투입 선택 가능 제품
  2. 오존수 세척 설비 선택
    - 감귤은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품목간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거점시설의 물량에 따라 연도별 분할 설치가 가능한 제품 우선
  5. 비파괴 선별기의 도입으로 인한 속도저하가 최소화되는 기종
  6. 감귤은 당도와 산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면 선택
  7. A/S 조건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 다.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 예시 : 신규시설 30억기준 >

- 건물(535평, 1,000백만원)
  - 집하선별포장장 : 200평×1백만원 = 200백만원
  - 예냉 또는 저온저장고 : 250평×2.7백만원 = 675백만원
  - 품질검사실, 사무실, 기타시설물 : 125평×1백만원 = 125백만원
- 유통장비(선별기, 체함기, 컨베어, 지게차, 냉장탑차 등), 상품성 향상장비(비파괴당도기, 에틸렌가스제거기 등) : 500백만원
- 상품화 전처리시설(세척기, 절단기, 살균기 등) : 1,000백만원
- 오·폐수처리 등 위생시설, 집진시설, 감리, 전체사업비 1%내에서 시설설치타당성 진단비용 등 : 500백만원

### 【참고사항】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하면 위의 표준단가를 초과할 수 있음
- 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가예시에 없는 시설장비(예 : 비파괴 당도측정기, 자동선별기·체함기, PC 등)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산지유통센터의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 검토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기계설비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해야 함
  - 지역농협의 경우 세부시설 설치전에 시설 설치 적정성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야 함
  -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 시설·장비 설치에 관하여 위탁운영주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 설계 및 설비설치에 관한 전문컨설팅업체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함
- 사업비중 부지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라. 지원 대상사업

-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 주체를 확보하고 원료조달 및 마케팅계획이 타당한 시설의 설치 및 보완
- 과수품목별 대표조직 계열화(공동브랜드사업) 사업계획에 포함된 권역별 규모화 산지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
- 공동마케팅조직, 사업연합 등 유통사업의 규모화·전문화 추진조직
  - \* 공동마케팅조직 : 농협조합 분사·자회사 또는 수개의 산지조직이 공동출자한 독립채산제 마케팅회사형태로서 회원제 공동계산 출하조직(출하의무 계약 등 체결)을 기반으로 전문인력 책임경영으로 운영되는 조직
  - \* 사업연합 : 수개 조직의 사업연합(법인여부 무관)을 결성하여 규약을 작성하고 동 규약에 따라 유통사업을 실시하는 조직

이 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사업이 아닌 거점산지유통시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사업신청

## 마. 지원내용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하되, 예냉·냉장수송은 취급품목의 특성에 따라 일괄설치를 권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정부예산의 범위에서 신규시설 설치 및 시설보완사업의 사업비 한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일괄지원의 예외>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시설 중 일부가 이미 구비된 경우는 당해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 사업계획상 냉장업체 등과 계약을 통해 저온수송을 하고자 할 경우는 냉장담차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소규모 분산투자 방지를 위한 지원규모 제한>

- 집하선별포장장, 예냉·저온저장고는 각각 100평(기준시설 포함)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예냉·저온저장고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저온저장이 불가능한 경우는 집하선별포장장으로 변경 가능

## 바. 사업추진 요령

### < 2004년도 사업 >

- 사업대상자 확정후 예냉시설에 대하여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기술검토

### < 2005년도 사업 >

- 시·도지사는 2005년도 사업으로 신청할 사업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와 합동으로 사업성진단을 실시(2004년 7월말까지)하고 2005년도 지방자율계획사업으로 신청
  - 협동조합은 농협중앙회 주관, 영농조합법인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주관으로 사업성진단을 실시하되,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실제로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할 법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사업성 진단 실시
  -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경우는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제1050호) 제41조의 요건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사업성 진단을 실시
  - 사업성진단서는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시·도에서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단, 수지전망은 향후 3개년 분석)
  - 사업성 진단에 참여한 진단자(시·도, 유통공사, 농협)는 진단서 하단에 직위·성명을 기재 서명하여야 함
- 행정기관(시·도, 시·군)은 사업성진단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진단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청자별 사업계획서, 현지확인 방문계획을 준비하여 사업성 진단에 차질 없도록 함

- 예냉시설에 대하여는 미리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기술검토를 거치고, 그 검토의견을 사업성 진단서에 기재토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예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기술검토 의뢰
  -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 농협, 유통공사에 통보
- 시장·군수,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산지유통시설 설치현황을 고려하여 시설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품목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배치계획을 수립
- 농협, 유통공사는 사업성 진단결과를 시·도에 통보
- 시·도지사는 농협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함(별지 4-4호 서식)(사업성진단을 받지 않은 신청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2005년 지방자율계획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농림부에 제출(별지 4-5호 서식)
  - 사업성진단결과반영현황(별지 4-6호서식)을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

**<심사항목 외 시·도지사가 고려할 우선순위>**

- ① 우선지원대상 사업자 : 공동마케팅조직·사업연합·산지유통전문조직·자조금 조성단체 추천조직 등
- ② 농지가 아닌 곳에 사업장 부지를 이미 확보한 경우(확보된 농지의 전용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포함)
- ③ 조직원의 결속도가 높고,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 실적이 있으며, 경영장부(경영일지)의 기록실적이 양호하고,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는 법인
- ④ 농지 중 지목이 “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 \* 농업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 농업진흥지역밖에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감면하고 있음(농지법시행령에 규정)

## 사. 사업시행 추진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월별 공정계획서식 붙임1)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부에 제출
- 사업계획변경 절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사업부지 변경, 운영자(사업시행주체가 시장·군수로서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부 보고)
  - \* 사업시행주체가 시장·군수인 산지유통센터의 경우 완공후 초기년도에는 운영자(사업성 진단을 실시한 법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방법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대출취급기관 또는 보조금집행자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아.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시·도와 농협중앙회 합동으로 매년마다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함
  -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실태 평가 및 지원” 참조(후면참조)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농산물유통공사의 평가결과 참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7년간	

\* 참고 :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2002.4.1) 시행 참조

## 자. 기타사항

- 세부시설별 사업비 표준단가는 예시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가격을 적용하되, 시장·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단가 산출명세서를 첨부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저온저장시설 중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 기계설비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및 다음과 같은 설계감리업체가 시행
    - 공조냉동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또는 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가 건축설계사무소와 공동으로 설계감리 수행
  - 예냉시설은 농산물 생산·유통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이 시행
  - 예냉시설 중 외국산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만 받도록 함
-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기술사의 정의와 설계·감리업무 수행 근거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술사법
- 감리비는 사업비 정산시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보조금에서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함
- 시설규모 산정을 위한 상담 및 문의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농협중앙회에 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개발 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하여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함

[ 별지 4-1호 서식 ]

○○○○년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다. 전년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량(톤)			품질인증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주) - 상표명 : ○○딸기, ○○사과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라.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설	저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장비
동 평 ( )	동 평 ( )	동 평 ( )	동 평 ( )	동 평 ( )	동 평 조 ( )	( )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건축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평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교부금	시·도 (시·군)비	자부담
사업비(계) - 건물 - 장비 등						

(주) - 부지구입비는 제외

-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제작회사	처리대상 품 목
○ 부 지	평	천원	백만원	-		
○ 건 물	평					
- 집하선별포장장	평			저장능력/일		
- 예냉고	평			〃		
- 저온저장고	평			〃		
- 예냉·저온저장 겸용고	평			-		
- 사무·회의실	평					
○ 기 계						
- 선별기	조			처리능력/시간		
- 포장기	대			〃		
- 컨베어	대					
○ 장 비						
- 냉장탑차	대					
- 팔레트	개					
- 수송차량	대					
- 운반상자	개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확보 :
- 토목설계 :
- 건축설계 :
- 착 공 :
- 준 공 :

#### 4. 사업계획

#####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 품목	지역(시·군)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면적	물량	조직원 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 나. 사업물량 처리

사업 품목	사업 물량	사업 기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저온창고 평균보관 물량/일
			시장 출하	직공급 (납품)	기타	기계 선별	수작업	

-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 지</li> <li>○ 자부담금</li> <li>○ 운 영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취자금</li> <li>- 관리비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자금</li> <li>○ 신규출자</li> <li>○ 외부차입</li> <li>○ 기 타</li> </ul>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취판매액</li> <li>- 선별포장수입</li> </ul> </li> <li>○ 기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원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입원가</li> <li>- 선별포장비용</li> </ul> </li> <li>○ 관리비</li> </ul>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4. 기 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 도 :
  - 사업대상품목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용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추진내용

내 용	규 모	처리능력	비 고

- 기타 특기사항





[ 별지 4-3호 서식 ]

〇〇〇〇년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신청자 명세서

( 시·도 )

신청자	사군	구분	주요 시설										사업비 천원	주요 품목	비고	
			예냉고 평	저온 저장고 평	예냉저온 겸용 평	집하선별 포장장 평	사무실 평	냉장 담차 대	간마늘 시설 대	비과과 糖度機 조	선별기 조					
( )	( / )	기존 신청 계														
( )	( / )	기존 신청 계														
( )	( / )	기존 신청 계														
( )	( / )	기존 신청 계														
( )	( / )	기존 신청 계														
( )	( / )	기존 신청 계														
( )	( / )	기존 신청 계														
( )	( / )	기존 신청 계														
( )	( / )	기존 신청 계														

- (주) ○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신청자와 별도로 ( )안에 운영예정자를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從”으로 해야 함. ○ 마늘과 간마늘은 주요품목란에 구분기재  
 ○ 시·군란에는 상단에 시·군명을 기재하고, 하단 ( )안에는 “배치계획정수/2001년까지 완료 또는 추진중인 개소 수”를 기재. 예 : 해남군(9/6)  
 ○ 비고란에는 “신규” 또는 “확장” 중 하나를 기재하되, “신규”로서 당해 시·군의 잔여정수를 초과할 경우는 정수를 이체받을 시·군명과 개소수를 ( )안에 기재하고, “확장”의 경우는 최초설치연도 및 추가설치연도를 ( )안에 기재. 예 : 신규(00군 1), 확장('95, '97, '99)

[ 별지 4-4호 서식 ]

〇〇〇〇년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 생산자 단체 )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1.규격상품화 추진여건 성숙도 (30점)	1-1.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15	10	7	5	A : 특허청에 등록(또는 출원)된 고유상표로 출하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 공동계산제를 실시하고 있음 B : 자체 고유상표로 출하하고 있으며, 공통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선별· 출하 C :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으며, 개별 농가별로 출하 D : 고유상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개별 농가별로 출하되고 있음	
	1-2.규격상품화 참여정도	5	4	3	2	A : 조직구성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이상 B : 조직구성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3,000-5,000톤 미만 C : 조직구성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3,000톤 미만 D : 조직구성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톤 미만	
	1-3.공동사업 실적	10	8	6	4	A : 포장재 지원사업에 따른 농관원 평점이 90점 이상(최우수조직) B : 80-90점 미만(우수조직 중 상) C : 70-80점 미만(우수조직 중 하) D : 70점 미만(일반조직, 미분류조직)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2.사업수행 능력 (30점)	2-1.경영구조 및 경영 관리능력	10	8	6	4	A : 평점 20점 B : 평점 16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미만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10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정리상태 우수	10
						분사형 책임경영	8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중 한가지만 우수	8
						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	6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미흡	6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4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불량	4
	2-2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 인력	5	4	3	2	A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이상 B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C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D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2-3.재무구조의 건전성	5	4	3	2	A : 평점 20점 이상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4억원 이상					10	150% 이상	10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8					100% 이상 150% 미만	8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					50% 이상 100% 미만	6		
2억원 미만	4	50% 미만	4						
2-4.자부담 능력	10	8	6	4	A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을 초과 B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를 초과하고, 앞으로의 조달계획이 합리적임 C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미만이나, 앞으로의 조 달 계획이 합리적임 D :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금을 초과하며, 앞으로의 조달 계획이 불투명함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3.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3-1.투자의 효율성	5	4	3	2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투자의 효율성(%) = $\frac{\text{경상이익}}{\text{투자비}} \times 100$			
	3-2.부지확보 계획	15	10	7	5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9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9점 미만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별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	10	제한 없음	5
						타인명의, 사용승락	6	조건부로 설치가능	3
타인명의, 사용 미승락	4	제한 있음	0						
3-3.입지조건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사업물량 확보 여건)	10	8	6	4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10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10점 미만				
						경합 보완성	평점	교통여건	평점
						유사시설이 없고, 물량확보 양호유사 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10	양호 보통	5
						유사시설이 있고 물량확보 곤란	7	미흡	3
3-4.예상가동율	5	4	3	2	A : 평점 10점 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선과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저장고 가동일수	평점
						150일 이상	5	300일 이상	5
						120일 이상 150일 미만	4	250일 이상 300일 미만	4
100일 이상 120일 미만	3	200일 이상 250일 미만	3						
100일 미만	2	200일 미만	2						
3-5.사·도지사 조정	5	4	3	2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4개소 이하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10-1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10% B : 총 신청자 수의 2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20개소 이상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5% B : 총 신청자 수의 1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35%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가점부여(각 5점) : ①공동마케팅조직,사업연합,산지유통전문조직의 시설설치 및 보완시, ②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보고서 첨부 ③타 조직 유통시설·장비에 대한 양수 실적이 있는 조직 ④품목별 대표조직 계열화(공동브랜드사업) 사업계획에 포함된 규모화 산지유통시설사업 ○입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가점)						가 점			
						감 점	△		
						기본점수+加減點 합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전년도 사업운영실태 평가(농수산물유통공사 평가) 결과 : (    등급)

지원가	지원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등급이 3개 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li> </ul> </li> <li>○ 지원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등급이 4개 이상인 사업자</li> <li>-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li> <li>- 7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li> <li>- 기존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보완의 경우 전년도 사업운영 실태평가 결과(농수산물유통공사) E등급이하 조직</li> </ul> </li> </ul>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 ○○○○년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 지방 자 치 단 체 )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1.규격상품화 추진여건 성숙도 (20점)	1-1.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10	8	6	4	A : 특허청에 등록(또는 출원)된 고유상표로 출하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 공동계산제를 실시하고 있음 B : 자체 고유상표로 출하하고 있으며, 공통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선별·출하 C :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으며, 개별 농가별로 출하 D : 고유상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개별 농가별로 출하되고 있음				
	1-2.규격상품화 참여정도	5	4	3	2	A : 조직구성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이상 B : 조직구성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3,000-5,000톤 미만 C : 조직구성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3,000톤 미만 D : 조직구성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톤 미만				
	1-3.공동규격 출하 사업 실적	5	4	3	2	A : 규격출하사업에 따른 농관원 평점이 90점 이상 (최우수조직) B : 80-90점 미만(우수조직 중 상) C : 70-80점 미만(우수조직 중 하) D : 70점 미만(일반조직, 미분류조직)				
2.사업수행 능력 (20점)	2-1.경영구조 및 경영능력	5	4	3	2	A : 평점 20점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10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정리상태 우수	10
						분사장 책임경영		8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중 한가지만 우수	8
						판매사업전담부서 (상무이상)		6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미흡	6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4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불량	4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2-2.대표자 및 경영진의 경력	5	4	3	2	A : 품질관리 및 마케팅전담인력 4명 이상 B : 품질관리 및 마케팅전담인력 3명 C : 품질관리 및 마케팅전담인력 2명 D : 품질관리 및 마케팅전담인력 1명			
	2-3.채무구조의 건전성	10	8	6	4	A : 평점 20점 이상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4억원 이상	10		150% 이상	10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8		100% 이상 150% 미만	8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		50% 이상 100% 미만	6
				2억원 미만	4	50% 미만	4		
3.지자체 사업 추진여건 (20점)	3-1.지원계획 및 예산편성 여부	10	8	6	4	A : 자체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지방비)에 반영 B : 예산(지방비)은 편성하지 않았으나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 C : 자체지원계획 수립 중 D : 별도 지원계획 없음			
	3-2.위탁운영자 선정	10	8	6	4	A : 공동마켓팅조직 또는 생산자조직 사업연합등을 위탁운영자로 선정 B :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위탁운영자로 선정 C : 일반생산자조직을 위탁운영자로 선정 D : 일반 유통업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4.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4-1.투자의 효율성	5	4	3	2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투자의 효율성(%) = $\frac{\text{경상이익}}{\text{투자비}} \times 100$			
	4-2.부지확보 계획	15	10	7	5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9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9점 미만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계약 체결	10	제한 없음	5
	타인명의, 사용승락	4	조건부로 설치가능	3					
타인명의, 사용 미승락	0	제한 있음		0					
4-3.입지조건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사업물량 확보 여건)	10	8	6	4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10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10점 미만				
					경합 보완성	평점	교통·입자여건	평점	
					유사시설이 없고, 물량확보 양호 유사 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유사시설이 있고 물량확보 곤란	10 7 4	양호 보통 미흡	5 3 0	
4-4.예상가동율	5	4	3	2	A : 평점 10점 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선과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150일 이상 120일 이상 150일 미만 100일 이상 120일 미만 100일 미만	5 4 3 2	300일 이상 250일 이상 300일 미만 200일 이상 250일 미만 200일 미만	5 4 3 2	
4-5.사도지사 조정	5	4	3	2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4개소 이하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10-1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10% B : 총 신청자 수의 2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20개소 이상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5% B : 총 신청자 수의 1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35%				
합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계				
○가점부여(각 5점) : ①사업타당성, 마케팅 계획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보고서 첨부 ②위탁운영자가 관내 조합과 사업연합·계열화를 위한 협약서 제출시 ③품목별 대표조직 계열화(공동브랜드사업) 사업계획에 포함된 규모화 산지유통시설사업 ○입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						가점			
						감점	△		
						기본점수+가감점 합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전년도 사업운영실태 평가(농수산물유통공사 평가) 결과 : (     등급)

지원가	지원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가능</li> <li>- D등급이 3개 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li> <li>○ 지원불가능</li> <li>- D등급이 4개 이상인 사업자</li> <li>-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li> <li>- 7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li> <li>- 기존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보완의 경우 전년도 사업운영실태평가 결과(농수산물유통공사) E이하 등급 조직</li> </ul>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심사자					

〇〇〇〇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신청자(운영예정자) 심사결과

( 시·도 )

순위 (평점)	신청자	시·군	구분	주요 시설										사업비		주요 품목	비고
				예냉고	저온 저장고	예냉온 겸용	접합선 포장장	선별 사무실	냉장 담차	간마늘 시설	비과과 糖度機	선별 기	신청액	조정액			
				평	평	평	평	평	대	대	조	조	천원	천원			
1 (00.0)	( )		신청 조정														
2 (00.0)	( )		신청 조정														
3 (00.0)	( )		신청 조정											< >			
4 (00.0)	( )		신청 조정											< >			
5 (00.0)	( )		신청 조정											< >			
6 (00.0)	( )		신청 조정											< >			
7 (00.0)	( )		신청 조정											< >			
8 (00.0)	( )		신청 조정											< >			
9 (00.0)	( )		신청 조정											< >			
10 (00.0)	( )		신청 조정											< >			

- (주) ○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신청자와 별도로 ( )안에 운영예정자를 기재  
 ○ 조정액에는 규정된 지원비율 및 자부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부담(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시·도비 또는 시·군비 부담)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비와 별도로 < >안에 추가부담액을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해야 함



(붙임 1)

**〇〇〇〇년 거점산지유통센터 월별 공정계획서(예시)**

사업자 명칭 :

사업장 소재지 : 시·도 시·군

工種	구분	월 별 공 정 계 획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착 공 전	부지 확보	工程	매입 계약	매입 완료									
	설계	工程		설계 계약	설계 완료								
		금액 (백만원)			10								
	인허가	工程		농지전용 용신청	농지전용 완료 건축허가 신청	건축허가 완료							
공사등 계약	工程				공사계약 체결	제작계약 체결	구매계약 체결						
착 공 후	토목 공사	工程			착공	완료							
		금액 (백만원)				10							
	건축 공사	工程					착공	10%	50%	80%	100%		
		금액 (백만원)						50	200 (250)	150 (400)	100 (500)		
	진기 공사	工程					착공	10%	50%	80%	100%		
		금액 (백만원)						10	40 (50)	30 (80)	20 (100)		
	설비 공사	工程							착공	50%	100%		
		금액 (백만원)								20	20 (40)		
	구매	工程									납품		
		금액 (백만원)									100		
제작	工程							착수	50%	100%			
	금액 (백만원)								20	20 (40)			
사업비계	工程			1.3%	1.3%	2.5%	10%	40%	67.5%	100%			
	금액 (백만원)			10 (자담)		10(자담) (20)	60(자담) (80)	80(자담) 160 (320)	220 (540)	260 (800)			

(주) ○ 자부담금이 2억원 미만이고 총사업비의 20% 미만인 경우는 자부담금 전액을 집행해야 정부자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는 자부담금을 착수시와 50% 공정시 각각 반씩 집행해야 정부자금을 집행할 수 있음(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2항)

- 공정은 누계공정이며, 금액란의 ( )안은 누계금액임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함

[ 별지 4-7호 서식 ]

**○○○○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정산 보고**

시·군	사업자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사업장 위 치	사 업 규 모						비율 (B/A)
				사업계획			사업실적			
				부지	건물 (A)	기계· 장비별 수량	부지	건물 (B)	기계· 장비별 수량	
					평			평		%

사 업 비 (천원)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집 행 계 획					집 행 실 적 정 산							비율 (B/A)
계	국고 보조 (A)	국고 융자	지방 교부금	자부담	계	국고 보조 (B)	국고 융자	지방 교부금	자부담			
											%	

사 업 세 부 명 세																	
건물설치명세(평)						기계·장비류 설치명세(개소수)											
계	선별 (과) 시설	집하 시설	저온 저장 시설	예냉 시설	기타	계	선별 기	포장 기	콘베 이어	태핑기· 밴딩기	제함 기	지게 차	냉장 차	파렛 트	운반 상자	.....	

(주) 사업세부명세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에 한함

## 1. 목 적

- 과수 재배의 근간인 무독·우량·규격묘목을 생산·검증·공급토록 지원함으로써 노동력 소요가 많고 수량과 품질이 떨어지는 생산성 저위 과원의 갱신을 촉진하여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과수산업의 경쟁력강화

## 2. 시책 및 추진방향

- 적법하게 등록·판매되는 우량규격묘 생산·검증·공급을 지원하여 무독·우량 과수묘목 유통체계 확립
- 무독·건전묘 재식을 통한 IFP, GAP 등 고품질·안전과실 생산체계 조기 정착
- 생산성 저위 과원을 고품질 생산과원으로 개편을 유도하여 고품질 생산 기반을 구축

##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4. 사업시행 요령

### 가. 지원대상자

- 종자산업법에 의거 품질보증 과수묘목 생산·판매가 가능한 농협, 영농법인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 무독묘 검증 사업자(도기술원 또는 묘목협회)는 도별 1개 정도로 제한 (무독묘 검증, 현장 과수묘목생산지 실사 등의 업무 수행)  
(원예연 또는 종자관리소에서 무독묘 검증기술개발 및 도단위 조직 교육/관리)

**나. 대상과종**

- 사과, 포도, 감귤, 배, 복숭아, 기타 핵과류 등

**다. 개소당 지원단가**

- 개소당 총 500백만원
  - 묘목생산포장 30,000평 기준으로 우량규격묘목을 적정주수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서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비 조정가능

<우량규격묘 생산기준>

	적정생산주수	우량규격묘목 기준
	주 이상	
키 낮은 사과 자근대묘	80,000	○ M9 자근대목길이 40cm이상, 묘목길이 140cm이상, 줄기직경 1.2cm이상, 곁가지(30~60cm)수 5개 이상
포도 접목묘	150,000	○ 대목길이 60cm이상, 줄기직경 0.6cm이상
감귤 묘	120,000	○ 대목길이 80cm이상, 줄기직경 0.7cm이상
공 통		○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병해충 미 감염묘 ○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질보증묘

**라. 지원조건**

- 기반조성 지원비율 : 보조 60%(국고 30, 지방비 30), 용자 20, 자부담 20
  - 국고용자 상환조건 : 연 3%,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용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마. 지원내용**

- 토지임차, 기반정비, 모수포 조성, 자근묘발근, 품종접목, 병해충 방제, 시비, 곁가지발생 및 유인 등 묘목 생산 비용
- 바이러스·바이로이드·문제 병해충 검정용 설비, 장비, 시약, 및 인증시스템 확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 묘포장을 기 조성한 지원대상자 에게는 기존 묘포장 보완 및 묘목생산을 지원



## 바. 대상자 선정

### (1) 선정기준

-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을 등록 농협, 영농법인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로서 품질보증 과수묘목을 생산·공급가능한 자

### (2) 우선선정 대상자

- 1순위 : 다음 선정기준을 갖춘 전문농협 및 농업기술센터
  - 종자산업법에 따라 대상 과종별 생산판매신고된 품종이 10개 이상인 자
  - 과수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병해충 등에 대한 검정 시설 및 인력 보유자
  - 무독 대목 자체 생산시설을 갖춘 자(대목 통한 감염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히 할 수 있음)
  - 격리된 무독 모수포를 확보한 자
  - 사과 M9 자근대묘 및 포도접목묘 등 우량규격묘 생산 경험이 있는 자
  - 묘포장 면적이 10,000평 이상인 자
- 2순위 : 상기선정기준이 3개 이상 충족되는 전문농협, 농업기술센터 및 영농법인

### (3) 선정절차

- 사업대상자는 정부가 제시한 지원내용을 토대로 묘목 생산, 검증 및 공급 계획 등에 관한 자체 사업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별로 묘포장 부지 확보여부, 연도별 묘목생산 및 공급계획, 시설·기자재의 용도, 융자담보 능력유무, 신용보증기금 활용가능여부 등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고품질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통합지침에 의거 사업계획 수립 및 우선 순위를 정해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는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등을 감안 사업을 배정하고, 시장·군수가 사업대상자를 확정

## 사. 사업시행

- 무독·무병 모수포 조성
  - 실생대목 또는 검증된 무독·무병 접목묘 확보
  - 주변 과원과 일정 거리를 둔 망실 등 보호시설 내에서 포장 조성
- 묘포장 조성
  -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묘포장 설치, 기자재 도입 등 사업실시
- 묘목생산
  - 종자산업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우량규격을 생산하여 품질보증 실시
- 생산묘목 공급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묘목생산자 대표·행정·지도·농협·농가대표 등이 참여한 “우량묘목공급위원회”를 구성
  - 품질평가 및 적정 공급가격 결정, 묘목 공급후 이품중, 잠복병해충 등 하자 발생시 공급자의 보상 수준 등 결정
    - 우량규격묘 생산·공급실적을 지속적으로 파악관리(생산·공급관리 대장)
  - 묘목 공급은 기존 저위과원의 갱신용으로 최우선 공급하고, 신규과원조성 및 면적 확대농가 공급은 지양할 것
  - 농가공급 묘목은 우량규격묘 이어야 하며, 공급자는 결실기까지 사후 관리 실시

<첨부>

사과 자근대표 생산사업 단가(예시/30,000평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단가(원)	금 액	비 고
<b>계</b>			<b>500,000</b>	
○ 배수시설 설치	30,000평	1,333	40,000	유공관 외
○ 관수시설 설치	30,000평	1,333	40,000	물탱크 외
○ 지주설치	30,000평	700	42,000	강선(5mm×1.8m) 60,000개
○ 관정개발	1공	30,000,000	30,000	5HP수중모터 외
○ 농기계구입				
- 트랙터 외	80HP, 1대	50,000,000	50,000	
- SS분무기	500ℓ, 1대	15,000,000	15,000	
- 대목수확기	2대	2,000,000	4,000	
○ 토양개량비				
- 소식회 외	30,000평	1,500	45,000	
○ 무독·무병묘 검정 시설·장비 및 묘목 보관시설	20평	2,500,000	234,000	자근대목구입비 (184백만원) 포함

[ 별지 제5-1호 서식 ]

○○년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 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인)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종묘업현황

등록자	등록일	등록번호	기술자 현황			
			성 명	주민번호	자격증	경 력
종자산업법에 따른 과수 묘목 생산판매신고 현황			신고된 과종		과종별 신고 품종수	

다. 키 낮은 사과, 포도접목묘 등 우량묘목 생산실적

연도별	묘목종류	품 종	생산량	공급량	공급가격	비 고
			주	주	원/주	

라. 대목 등 모수 보유현황

품종	수령	보유량	확보경로	증식가능량	바이러스·바이로이드 등 검정여부
	년	주		주	

3. 묘포장 설치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평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묘포장 설치계획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00%)	국고보조	국고용자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계) - 모수포설치 - 묘포장설치 - 기자재 등					

(주) - 부지구입비는 제외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국고용자 20, 지방비 30, 자부담20

○ 세부사업 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활용능력	비 고
○ 부 지		천원	백만원	-	
○ 모수포설치 - - -					
○ 묘포장설치 - - -					
○ 기자재구입 - - -					
○ 묘목양성 - - -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 
- 
- 
-

#### 4. 묘목생산 및 공급

##### 가. 사업물량 확보

	과종	품종	연도별 생산 및 공급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이후
대목생산			주			
묘목생산			주			
공급가격			원/주			

\* 공급가격은 예정가격을 말함

##### 나. 사후관리계획

- 묘목 공급후 이품종, 잠재병해충 발생시 보상대책 등 사후관리 계획

#### 5. 기 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 도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용자	지방비	자부담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 추진(정산)결과 보고**

(단위 : 천원)

시군별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계획					집행실적(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또는 집행잔액	
		품목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고	용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용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용자	국고	용자
	합계			%															

- 주) 가.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ha, 종 등으로 기재
- 나. “세부사업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세부사업내용을 기재
- 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 라. 부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자별로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미집행액(이월, 불용, 집행잔액으로 구분)및 사유 등



## 6

##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1. 목 적

- 농산가공식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및 농산물가공업체의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 추진
- 가공용 농산물의 수요개발로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산물가공업체의 시설확장으로 생산·경영규모를 늘려 규모화경제 촉진
- 시설현대화·자동화 등을 지원하여 생산경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 추진
- 오·폐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지원하여 친환경산업으로 육성
- 저장시설 확충으로 원료농산물의 선도유지(안전성 높은 식품 생산)
- 포도·사과주 등 과실주의 장기저장·숙성을 유도하여 고급명주 개발 지원

###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 4. 사업시행 요령

#### 가. 지원대상자

- 사과, 배, 포도, 감귤 등 국산과실을 이용하여 주류, 쥬스, 잼 등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품목별 조직에 속하는 업체 또는 품목별 조직과 원료공급과 관련하여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업체

※ 품목별 조직의 범위 : 「제Ⅱ장 4. 지원대상자 선정」을 참조

#### 나.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국고융자 10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 3.0%,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지원단가 : 개소당 500백만원(자부담 포함)
  - 사업자의 경영상태, 사업성 등에 따라 증감가능

#### 다. 지원사업 내용 및 종류

- 가공공장 증설, 시설현대화·자동화 등 개보수, 저장시설 및 용기, 오·폐수 처리 시설, 수확후 전처리시설, 기타 생산제품의 품질향상 및 비용절감 시설과 기계·장비의 구입·설치(부지구입 및 신규건설은 제외)

#### 라. 지원대상자 선정순위

- 국산과실 가공실적(비율)이 많은 업체
-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가 형성된 업체
- 신제품 개발, 판로확보, 가격경쟁력 확보 등으로 시장성이 높은 업체
- 정부지원업체, 명인 또는 신지식인 지정업체, 품질인증 업체 등

#### 마. 정산 및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물가관련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료, 2개 이상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의 가격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세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시설단가와 기계·장비 종류별 공급단가의 타당성과 사실여부를 철저히 검정하여 정산함으로써 지원자금이 실제 시세보다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정산을 철저히 실시
- 사업주관기관은 증거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 위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별로 확정 통지한 용자사업의 공장증설, 현대화·자동화 기계·장비의 기종명, 제조업체명, 규격, 수량과 사업비 명세서 내역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에 중복되는 시설과 기계·장비가 투자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거 집행토록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농산물가공공장 관리준칙(식품 51150~359, '01.7.2)의 '농산물가공공장'의 사후관리에 준하여 시설물관리 및 운영지도를 철저히 실시

[ 별지 제6-1호 서식 ]

사업계획신청서(총괄)					
신청자	사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전화
사업계획	사업체명		가공품목		주원료
	공장증설	m <sup>2</sup>	시설현대화 (개·보수시설, 오·폐수시설 등)	종, 점 m <sup>2</sup>	
	재원조달 (백만원)	계	정부융자	금융기관 차입	자부담
	사업형태			구성원내역	
<p>한·칠레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지원에관한특별법 및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가공품생산공장을 증설(또는 시설개보수)하고자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 장 군 수 귀하 구청장</p>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붙임 예시 참조)					수수료
					없 음

< 붙임 >

## 사 업 계 획 서(예시)

### 1.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가. 사업의 필요성

- 1) 사업여건
- 2) 타 당 성
- 3) 기 타

나. 기대효과

- 1) 농가소득증대 측면
- 2) 국산농산물 수요창출 측면
- 3) 가공품 품질향상 측면
- 4) 고용효과
- 5) 향후전망
- 6) 기 타

### 2. 사업주체

가. 사업개요

사 업 명		주요품목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규모	건물 평, 기계·장비류 점,	사업구분	공장증설, 시설개보수
자 금 총소요액	백만원	자금지원 요 청 액	백만원
시설자금등 기지원내역			

※ 시설자금등 기지원내역은 지원년도와 지원금액(보조, 융자 구분)기재

나. 대표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주소				
주요경력	기간	내용		
재산현황 (백만원)	동산	부동산	기타	계

※ 주요경력은 최종학력, 기업체명 및 근무부서 등 기재

다. 조직현황

○ 영농법인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법인명		등기 연·월·일	
설립목적			
출자현황	○ 출자자수 :       명 (농업인       명, 비농업인       명) ○ 출자액 :        억원 (비농업인        억원, 비농업인        억원)		
사업실적			

※ 사업실적자료 붙임

○ 농업인 및 농가공동(공동참여농가 현황)

성명	주소	소요경지 면적(평)	제품원료생산량		참여형태	날인
			원료(톤)	금액 (백만원)		

※ 참여형태는 출자(금액명기), 원료제공, 취업으로 구분하여 기재

※ 공동참여자의 총회의사록 및 자체정관 붙임

○ 일반업체

연·월·일	회사연혁 및 사업실적

3. 제품개발 내역(계획)

\* 해당될 경우에만 작성

품 목	원 료 명	
<p>○ 제품개발내역(또는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료조달방법 :</li> <li>- 제조가공방법 :</li> <li>- 제품특징 및 내용</li> </ul> <p>○ 연구용역상황(또는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내용 :</li> <li>- 연구기간 :</li> <li>- 연구기관 및 대표자 :</li> <li>- 비 용 :</li> </ul>		

#### 4. 세부 사업계획

##### 가. 공장증설 사업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규격	수량	단가 3」	금액	비고
1. 건물 1」 가. 작업장 나. 일반창고 다. 저온창고 라. 사무실 등 마. 기 타					
2. 구축물 가. 용수시설 나. 수배전시설 다. 오페수시설 라. 기 타					
3. 가공기계·설비 2」					
4. 공기구비품					
5. 전기공사					
6. 설 계 비					
7. 기 타					
계					

주) 1」 건물의 경우 비고란에는 건축구조계획 기재(예 : 철골조판넬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구조 등)

2」 가공기계·설비의 경우 총수량 및 총금액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세부명세는 별지로 작성 첨부

3」 단가는 실거래 가격으로 기재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나. 시설개보수 등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시설개보수 내역 <sup>1)</sup>	규격	생산능력 <sup>2)</sup> (톤/시간)	수량	단가	금액	구입 (계획)처	비고 (TEL)
		W×L×H					

주) 1) 시설개보수 내역에는 시설현대화·자동화 등 개·보수, 저장 및 오·폐수 처리 시설, 기타 생산제품의 품질향상 및 비용절감 시설과 기계·장비의 내역을 종류별·공정별로 구체적으로 구분·기재

2) 생산능력은 각 가공기계의 시간당 생산능력을 기재하며 저장탱크일 경우에는 저장능력 및 1회전 처리기간 명기 (필요시 견적서 붙임)

5. 소요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

가. 조달계획(총괄)

항목	규모 (평)	단가 (천원)	재원조달 (백만원)					
			계	정부유자	업체 자부담			
					소계	금융기관 차입	자부담	
증 설 자 금	건물							
	- 작업장							
	- 일반창고							
	- 저온창고							
	- 사무실 등 부대시설							
	- 기타							
구 축 물	구축물							
	- 용수시설							
	- 수배진시설							
	- 오·폐수시설							
	- 기타							
가공기계·장비								
기타								
증설자금합계(A)								
시설개보수 자금(B)								
<b>총계 (A+B)</b>								

주) 총계란은 사업계획승인신청서(별지1호서식)의 재원조달 금액중 총사업비와 일치하여야 함.



나. 세부 자금조달계획

○ 업체부담금 조달방법

(단위 : 백만원)

재 원	금 액	조달시기	조달방법	비 고
자 기 자 금				
외 부 차 입				
계				

※ 외부차입 : 정부지원요청액은 제외

○ 금융기관 차입금 내역

(단위 : 백만원)

거래은행	금 액	차입일	상환기간	상환일	상환잔액	용 도
계						

○ 담보물 현황

소유자	종 류	면적(㎡)	추 정 가 격		지 번	비 고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계						

## 6. 원료 조달계획

연도별	원료명	조달처	조달방법	조달시기	소요물량 (톤)	차금소요액 (백만원)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주) 1. 원료명은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달처는 구입원료의 생산지임.  
 2. 조달방법은 계약재배, 자가생산, 농가직구입, 도소매상 등 구입으로 기재

## 7. 생산 및 판매계획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제품명	단가 (원/kg)	생산능력		생산계획		판매계획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내수	수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주) 1. 추가지원업체인 경우는 기존생산능력을 비교란에 별도 기재하고 신규업체도 기존 생산능력이 있으면 기재, 제품명은 생산품목을, 단가는 생산제품의 계획판매 단가를 기재  
 2. 생산능력은 1일8시간 기준, 년300일로 환산하여 기재(기계의 생산능력기준)

## 8. 판매방법

(단위 : 톤, 백만원)

제 품 명	수 량	금 액	판매(예정)처	비 고

※ 제품별, 판매회사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OEM은 비고란에 명시)하고 판매(예정) 계약서, 상담내역서 등을 첨부해야 지원대상자로 우선 선정가능

## 9. 생산·판매실적

구 분	년 도	물 량	금 액	주판매처 (주수출국)	비 고
생 산	전전년도	톤	백만원		
	직전년도				
판 매 (수출)	전전년도	톤 (     톤)	백만원 (     천\$)		
	직전년도				

주) 재무제표 또는 세무서 신고자료(부가세신고내역등), 경영장부상 매출액, 생산일보 등 판매 및 생산실적 확인 자료붙임(수출업체는 수출실적자료)

[ 별지 제6-2호 서식 ]

○○○○사업(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 증 설 >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비용자	자부담
	(100%)	( )	( )

○ 세부명세

세부시설명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비고
○○○○	계 ○○○○ ○○○○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기재
○○○○	계 ○○○○ ○○○○ · ·						
합계	·						

## < 작성요령 >

- 법인, 공동조직 등의 경우는 지원대상자 주소·성명란에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밑에 구성원 성명을 부기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첨부  
(증빙 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
  - ① 사업자 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②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③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④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는 직접 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외의 자(사업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은 제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 증빙을 시장·군수가 당해지역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6호의 규정 참조)
  - ⑤ 시설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
- 주요공정 및 완성 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사업비 금전출납부와 거래 통장, 기타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
- 검정 및 정산담당자는 위 세부명세내용 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현장에서 대조·확인하여 검정 실시
-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구분 기재

○○○○사업(○○년말) 검정 및 정산서

<시설개보수(기계·장비)>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기종명 (제품명)	제 조 회사명	규격 (형식)	제조 번호	수량 (대)	단가 (천원)	사업비 집행액(천원)			영세율적용 여부(○,×)	비 고
						계	국고용자	자부담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 작성요령 >

- 법인, 공동조직 등의 경우는 지원대상자 주소·성명란에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밑에 구성원 성명을 부기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사업비 집행액 합계와 일치)
  - ①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②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③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 구입대상 신품의 기계·장비가격을 지원대상자의 중고 기계·장비가격과 상계처리하고 지원대상자가 그 차액만 공급자에게 지급할 경우는 당해 중고기계·장비의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 제조번호(제작년도 포함), 가격 등을 기재한 계약서 사본을 자부담금과 관련된 위의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별로 1장에 여러 지원대상자를 연속하여 작성 가능

## IV. 중앙추진사업

1. 과원 영농규모화 사업 .....167
2.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201
3. 과원 폐업지원사업 .....221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  
(과장 여인홍, 사무관 장동진)입니다.

# 여 백



# 1

# 과원영농규모화사업

## 1. 목 적

- 과원매매·장기임대차를 통해 과수재배농가의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
-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

## 2. 시책 및 추진방향

- 규모화·전문화된 과수농가를 지원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발전가능성이 큰 우수 경영체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과수농가의 안정된 영농보장과 자립여건 조성
  - 사업시행기간 : 2004~2010(7년간)

##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 4. 사업시행요령

### < 사업개요 >

#### 가. 사업내용

##### (1) 과원매매사업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의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2) 과원장기임대차사업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과원을 장기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게 장기 임대

**나. 지원대상자**

- 과원 경영능력과 기술력을 갖추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과수농가
-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다. 지원대상과원**

-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안의 과원(실제 이용현황 기준)

**라. 2004년도 지원계획 : 21,400백만원(300ha)**

- 과원매매 : 18,900백만원(200ha)
- 과원임대차 : 2,500백만원(100ha)

**마. 매매사업지원상한 및 자부담**

- 지원상한 : 평당 40,000원 (과수목 포함)
- 자 부 담 : 지원상한 범위내에서 10%(지원상한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바.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구 분	지 원 규 모	지 원 조 건	
		융자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 과원매매 사업	기존소유규모 포함 5ha	연리 3.0%	연령에 따라 10~30년 원금 균분상환·거치식상환·채증식상환
○ 과원임대차 사업	기존임차규모 포함 5ha	무이자	5~10년 원금 균분상환

※ 과원매매의 상환기간은 과수농가의 연령을 고려하여 약정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과수화훼과 (02) 500-1873~1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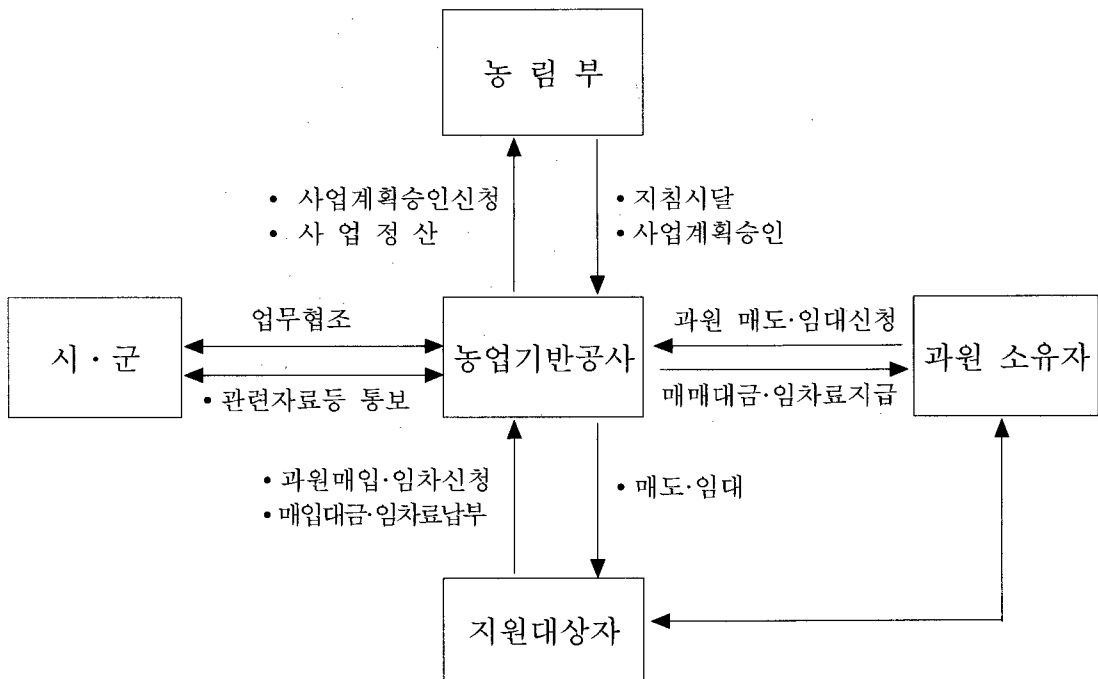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1) 농업기반공사(과원영농규모화사업 시행)
  - (가) 본 사 : 농지사업처(031) 420-3058, 3356
  - (나) 각 도본부 : 농지사업부
  - (다) 시·군 관할지사 : 농지사업부, 사업부 또는 총무부

### 다. 사업추진절차

- (1) 사업시행지침 시달(농림부 → 공사)
- (2)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공사 → 농림부)
- (3) 사업시행계획 승인(농림부 → 공사)
- (4) 사업자금 대여신청(공사 → 기금수탁관리자)
- (5) 사업자금 대여(기금수탁관리자 → 공사)
- (6) 과원매도·임대신청(과원소유자 → 공사)
- (7) 신청내용 현지조사·확인(공사 지사)
- (8) 과원매입·임차계약(공사 ↔ 과원소유자)
- (9) 매입대금·임차료지급(공사 → 과원소유자)
- (10) 과원매입·임차신청(지원대상자 → 공사)
- (11) 신청내용현지조사·확인, 지원대상자 선정(공사 지사)
- (12) 과원매도·임대계약 및 채권확보(지원대상자 ↔ 공사)
- (13) 원리금·임차료납부(지원대상자 → 공사)

#### <사업추진 체계도>



## 라. 사업시행요령

### (1) 과원매매사업

#### (가) 대상과원 확보

##### 1) 매입대상과원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안의 과원(과수목 포함)

##### 2) 매입우선순위

- 농업기반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상기 매입대상 과원을 다음 순위에 따라 매입하며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규모가 큰 과원을 우선 매입
  - 폐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소유 과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
  -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 의무기간내에 있는 농지(과원) 중 과원매입 희망자의 규모화·집단화에 기여가 가능한 과원
  - 국·공유의 과원, 담보권실행 등에 의한 경매과원

##### 3) 매입제외 과원

- 식재된 과수목의 수령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원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감정평가비용은 과원 소유자가 부담)
- 공사에서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과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 가능
  - 지원받은 농업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과원(영농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공사의 전매동의를 받아 매도하는 과원
  - 전매제한기간(8년)이 경과되어 과원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과원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과원(세부사항은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13호와 같음)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토양으로 판명된 후 복구되지 않은 과원
-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과수경작에 부적합한 과원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과원

#### 4) 과원매도 신청(과원소유자 → 공사)

- 과원을 공사에 매도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원매도 신청서를 '04년 사업시행지침 통보후부터 연중 지원대상자 주소지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5) 매입가격의 결정

- 과원(과수목 포함)의 매입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공사의 현지조사가격 및 감정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과원 매도자와 합의하에 결정하되, 과수목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결정(감정평가비용은 과원 소유자가 부담)
- 과원가격 현지조사시에는 농지관리위원, 이장, 인근주민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

#### 6) 매입계약 체결 및 매입대금지급

- 공사는 매입대상 과원소유자와 매매협의를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
- 공사가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매입대금을 지급
  - 계약금 : 매매계약 체결시 매입대금의 10%
  - 잔 금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 (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한도 결정

##### 1) 지원대상자(아래의 각 항목 한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0세이하의 지원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과수를 재배한 농업인으로서 주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품목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농가. 다만, 60세를 초과하는 농업인은 영농기반을 승계할 수 있는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에 후계인력명의로 지원 가능

< 농업후계인력의 요건 >

- ㉔ 18세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자 포함)
- ㉕ 직계비속으로서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와 농과계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과계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이 경우 연령과 영농 경력의 제한은 없음)

- 과수를 주 작목으로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이며, 조합원 또는 사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총 출자액의 30% 이상을 과원으로 출자하고, 경작하고 있는 법인명의 소유과원이 각각 영농조합법인은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인 법인
  -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 조합원 2/3 이상이 과수재배경력 3년 이상인 법인
  - 운영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2) 지원 제외자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자기 보유과원을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
- 현재 재배하고 있는 주된 작목 이외의 작목이 식재된 과원을 매입신청하는 자
- 당해 과원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기존 경작지나 지원대상자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 다만, 과원규모확대를 위하여 경작지를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3) 과원매입 신청(지원대상자 → 공사)

- 공사로부터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과원 매입신청서를 '04년 사업시행지침 통보후부터 연중 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신규 신청자나 기 지원자중 사업계획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원규모화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4)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
  - 폐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소유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하여 영농규모를 축소코자하는 농가의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 비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 매입신청 규모가 큰 자
  - 과수재해보험 가입자

5) 지원한도 결정

- 대상자별 지원한도는 과원소유규모를 포함하여 다음 한도내에서 지원
  - 과수농가 : 5ha
  - 과수를 주 작목으로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10ha
- 공사는 지원대상자의 농업노동력, 전문성, 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별 적정지원수준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지원한도 결정

(다)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

1) 매매가격의 결정

- 공사가 매입한 가격 기준으로 매입신청자와 매매가격 결정. 다만, 경매에 의하여 매입한 과원은 시가 기준

2) 매매계약의 체결 및 채권확보

- 공사는 매입신청자와 매매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

- 매매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의 부실화 방지
  - 공사로부터 매입한 과원은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매매 계약일로부터 8년간 전매·임대·위탁경영 등이 제한되며, 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 공사는 타인에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음
- 공사는 매도대금을 분할수납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과원 외에 추가근저당설정 등 가능

### 3) 매매대금의 납부

- 일시불 : 과원매입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일시불로 납부
- 분할납부
  -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0년까지 원리금 분할납부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 만 40세이하 30년, 41세~55세이하 20년, 56세~60세이하 15년, 61세이상 10년
    - ※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납부방법 : 원금(이자포함) 균등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가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거치 후 잔여기간 원금(이자포함) 균등분할 납부 또는 체증식 분할 납부
    - 과원매입가격이 지원상한을 20%이상 초과하여 자부담액이 과다한 경우
    - 후채농업인 등 지원 초기의 자금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공사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 4) 자연재해에 따른 납부연기

- 공사는 과원매매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대금 납부 연기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조치
  -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지원받은 과원의 필지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피해율은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의 필지별 피해율 적용)
- 공사는 납부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농지관리위원 또는 이장의 의견수렴
- 연기기준 : 1년간 납부 연기



## (2) 과원 임대차사업

### (가) 임차대상과원확보

- 1) 대상과원 :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안의 과원
- 2) 임차 우선순위
  - 과원소유자가 공사에 임대한 과원으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
- 3) 임차 제외과원
  -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과원
  - 과원매매사업에서 매입이 제외되는 과원
- 4) 과원임대신청(과원소유자 → 공사)
  - 과원을 공사에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원임대신청서를 '04년 사업시행지침 통보후부터 연중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5) 임차료의 결정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 당사자간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지역관행 임차료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
- 6) 임차계약 체결
  - 임차기간 : 5~10년
  - 공사는 과원소유자와 과수목의 과실수확 가능연수 등을 고려한 임차기간 및 임차료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차 계약을 체결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거나 다음 중 1의 보증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과원소유자)이 부담
    -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보증능력이 있는 자 1인의 입보. 다만, 임차료 선급금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2인 입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 불가

#### 7) 임차료 지급

- 공사는 과원소유자와 임차계약 체결 후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거나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서를 징구한 때에 과원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일시불로 선지급 또는 분할지급 가능)

#### (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한도 결정

1) 지원대상자 : 과원매매사업 지원대상자와 같음

2) 임대지원 제외자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기준으로 만 60세를 초과하는 농업인. 다만, 6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는 후계인력명의로 지원 가능
- 과원매매사업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농업인

3) 과원임차신청(지원대상자 → 공사)

- 공사로부터 과원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원 임차신청서를 '04년 사업시행지침 통보후부터 연중 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첨부서류는 과원매매사업과 같음)

4)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임대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
  - 공사로부터 임차한 과원을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계속 재임차하고자 하는 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하여 영농규모를 축소코자하는 농가의 과원을 임차코자 하는 자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을 임차코자 하는 자
  - 임차신청 규모가 큰 자
  - 과수재해보험 가입자

5) 지원한도 결정

- 대상자별 지원한도는 기존 임차규모를 포함하여 다음 한도내에서 지원
  - 과수농가 : 5ha
  - 과수를 주 작목으로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10ha
- ※ 지원 대상자의 농업노동력 보유현황, 전문성,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공사는 과원매매사업과 같이 지원대상자별 적정지원 수준 설정)

(다) 임대계약체결 및 임차료 납부

1) 임대차 기간 : 5~10년

2) 임대료의 결정

- 임대료는 공사가 선지급한 임차료 총액으로 결정

3) 임대계약체결 및 채권확보

- 공사는 임차신청자와 임대차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임대계약을 체결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인의 소유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다음 중 1의 보증서를 징구
  -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 재산세를 납입하고 있는 보증능력 있는 자의 보증서

4) 임차료 납부

- 공사로부터 과원을 임차한 과수농가 등은 공사에서 과원소유자에게 선지급한 임차료를 임차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매년 공사에 납부
- ※ 공사는 임차자가 당해연도 임차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납부를 촉구하여 징수

5) 임차료의 감면

- 공사는 공사로부터 과원을 임차한 자가 아래 사유로 인하여 임차료의 감면을 청구한 때에는 임차료를 감면
  -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자연재해로 인하여 공사 지원과원의 필지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
- ※ 피해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의 필지별 피해율 적용

- 공사는 임차인으로부터 당해 과실을 수확하기 전에 감면청구를 받아야 하며, 관계 공공기관에서 재해대책시 조사한 자료를 첨부토록 하여야 함
- 공사는 감면청구가 있는 경우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감면
- 임차료 감면기준

피 해 율	임차료 감면율
30% - 40% 미만	45%
40% - 50% 미만	55%
50% - 60% 미만	70%
60% - 70% 미만	80%
70% - 80% 미만	95%
80%이상	100%

(라) 공과금 등의 부담

- 공사에 과원을 장기임대한 자(과원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각종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 농어촌정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과금(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제외한다)과 용자금의 상환금
  - 천재지변 기타 재해 등으로 과원(과수목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공사로부터 과원을 장기임차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과원복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

<행정사항>

가.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사업비 정산

(1) 사업계획의 승인 및 시달

- (가) 농림부장관은 다음연도의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계획이 확정 되면 사업시행지침을 공사에 시달
- (나) 공사 사장은 농림부로부터 시달된 사업지침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다) 농림부장관은 공사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하여 승인 시달

## (2)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 (가) 농업기반공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농업기반공사 각 지사의 게시판 등에 10일이상 게시 공고

## (3) 사업비 대여

- (가) 자금지원기관은 확정된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자금소요시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소요자금 대여신청을 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자금집행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여
- (나) 자금의 대여 및 지원 받은 농업인으로부터 상환된 원리금 상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4) 사업정산

- (가) 공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당해연도의 과원규모화사업 정산서를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정산을 받아야 함
- (나) 공사는 사업정산결과 과원매매 및 임대차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납입하고 조세공과금 및 고의·과실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부실채권 등 손실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서 손비처리

## 나. 사후관리

### (1) 관리체계

#### (가) 관리기관

- 관리책임자 : 농업기반공사 지사장
- 관리보조자 : 농업기술센터 소장

#### (나) 기관별 업무분장

- 농업기반공사(기금대출취급기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후 사후관리, 사업추진상황 점검, 경영지도 및 교육
- 농업기술센터 : 과수농가에 대한 기술지도

## (2) 과수농가 관리(공사, 농업기술센터)

### (가) 관리기간

-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는 상환기간이 최장기인 융자금의 상환만기일까지

### (나)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

- 공사 지사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지원 받은 과수농가 등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1회이상 점검

### (다) 계약해제·해지 및 지원자금 회수

#### <계약해제·해지>

- 지원받은 과수농가가 지원자금을 지원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본인 또는 농업후계인력이 사망, 신병, 전출, 전업, 사업포기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파산·금치산선고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신분 및 신용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으로서 과원규모화 사업자금을 지원 받고 지원대상농가로 선정된 경우
- 과원을 지원받은 이후 소유과원을 고의로 증여·매도 및 임대·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하자로서 경영규모 축소 익년도부터 2년이내에 종전 면적으로 과원경영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 <시정조치 및 지원금 등 회수>

- 계약해제·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즉시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자금을 상환(반납)하도록 통보
  - 과수영농시설 복구 및 작목입식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취소사유 발생 확인시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자금 회수 조치
- ※ 다만,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승계도 불가능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융자시의 융자조건에 따라 회수

(라) 자격 승계

-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자격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업승계신청서를 공사 지사에 제출하여 자격 승계신청
  - 사망, 질병 또는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없는 경우
  -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하여 만 61세 이상으로서 농업후계인력에게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 공사 지사장은 피승계자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원받은 과원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과원영농규모 확대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적격자에 한하여 승인
  - 피승계자의 자격 요건
    - 과원매매사업에서 정한 농업후계인력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배우자·형제자매에 한함(배우자·형제자매의 경우는 만 60세 이하이어야 함)
- 공사 지사장은 승계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원 등 지원받은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을 조건으로 승계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승계신청인에게 통보

(마) 사업계획의 변경 등

-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받은 자가 농업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변경통지서를 공사 지사에 제출
- 사업장소 및 관리기관의 변경
  -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당초 관할 공사 지사장에게 이전사실을 통지
    - 댐·저수지 건설, 산업단지·택지조성, 공용·공공용지 편입 등으로 경영규모가 축소된 경우
    - 결혼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영농규모 확대 또는 집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주지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이전사실을 통지받은 공사 지사장은 이전후 관할 지사장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이관조치
  - 이관조치 : 통보일부터 7일 이내
  - 보증인교체(필요시) :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이전후 지사)
  - 보증인이 교체될 때까지 전 보증인에 대한 관리는 이전전 지사에서 담당

## 다. 지원과원 관리(농업기반공사)

### (1) 사후관리상황조사

(가) 공사는 전년도 12월말일까지 과원의 매매, 임대차사업으로 지원한 과원 및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

- 지원을 받은 자와 농업후계인력의 이농 또는 전업(轉業)여부
- 지원된 과원의 전매·중여·임대·전대·대리경작 또는 무단전용 여부
- 지원받은 당시 과수품목 이외의 타 작목 재배 여부
- 경영규모 축소여부

(나)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공사에서 정한시정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대장 또는 P/G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매도과원 : 지원금 또는 당해과원 회수
- 임대과원 : 임대차계약 해지
- ※ 과원매매사업으로 지원 받은 자 등이 고의로 경영규모를 축소한 경우 . 당해과원 회수

(다) 회수과원 가격결정 : 실제 거래가격범위내에서 당초 매도가격에 다음 경비를 가산한 금액(경매취득 과원의 경우 실거래가격)

- 이자 : 이미 상환한 이자와 매매계약 체결시까지 상환할 이자
- 소유권이전등기비용 : 법무사수수료
- 기타 과원매입에 직접 소요된 경비 : 취득세, 등록세
- ※ 공사의 전매동의를 의해 계약이 해지되어 재매입하는 경우의 가격 결정과는 다름에 유의



(라) 계약위반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위·담합·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행위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위약금을 부과
  - 당초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일부부터 납입일까지 기산하여 연리 15%를 부과 다만, 위약금의 총액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사후관리 위반 등으로 확인되면 위약금을 부과
  -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위반일 또는 위반사실을 안날(임대인과 공사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납입일까지 연리 15%를 부과. 다만, 위약금의 총액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2)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

(가) 공사는 과원을 매입한 자로부터 당해 과원의 전매·증여, 임대·위탁경영, 전용 등의 동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동의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과원을 전매·증여하는 경우
  - 지원받은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구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그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여 과원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지원받은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지역 내에서 농업이외의 직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 공사로부터 매입한 과원을 상속받은 자가 당해 과원을 전매하는 경우
  - 지원받은 농가의 개인파산 등에 따라 채권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고 공사의 과원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과수농가에게 전매하는 경우
  - 기타 농림부장관이 위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원을 전매·증여·임대·위탁 경영하는 경우
  -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장기간 과원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여 농업노동력이 없는 경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과원 경영규모확대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 각종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으로 직접 영농을 할 수 없어 그 임기 동안 임대 또는 위탁 경영하는 경우
- 농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 시설부지로 과원을 전용하는 경우

(3) 공공사업 등에 의한 과원전용시 조치

(가) 공공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공사의 동의를 받아 과원을 전매하거나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해당면적 이상의 과원을 새로이 구입하거나 조성해야 함

(나) 해당면적 이상 과원을 구입하거나 조성할 수 없을 경우 부족면적에 대한 지원금 회수

(4) 관리기록부 비치 및 채권관리 등

(가) 공사는 과원의 매매, 임대차사업별로 관리기록부를 비치·관리하고 채권의 실효성과 실익성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관리

(나) 공사는 불건전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권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법적조치 등을 취하여 채권을 회수

**라. 기타 행정사항**

(1) 기관간 협조

(가) 농림사업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군, 농협 및 농업기반공사 등 관계기관은 관련자료 열람 등 요청시 보유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

(나) 관할 농지관리위원회는 과원의 매매가격 또는 임대료의 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결과를 매매 및 임대차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농업기반공사의 과원가격 및 임대차료 조사 등에 적극 협조

## (2) 사업홍보

- (가) 공사는 지방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과수농가 등의 참여를 촉진
- (나) 공사는 과원 영농규모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매도과원 현황 등을 게재하여 사업참여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3) 정책자금 우선 지원 및 경영지도

- (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의 장, 읍자취급기관장은 사업 실적이 우수한 자가 자금지원을 요청한 경우 농촌발전 관련 각종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나) 공사는 과수농가의 정보화 및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

## (4) 업무지침 운영·기타

- 공사는 과원 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목적 달성, 지원 과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채권관리를 위하여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을 운영할 수 있음

## 마. 보고

### (1) 사업추진실적 보고

- 공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과원규모화사업 추진실적보고서를 종합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2) 사후관리상황 보고

- 공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지원과원에 대한 사후관리상황조사 결과를 10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5. 2005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거주지관할 농업기반공사 각 지사

나. 신청자격

- (1) 과원매도·임대 : 비농가, 전업·은퇴하고자 하는 과수농가 등
- (2) 과원매입·임차 : 과수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다. 신청절차

- 2005년도에 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해당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신청서식은 공사 각 지사에 비치)

라. 신청서식

- (1) 과원매도 : 별지 제1호 서식
- (2) 과원매입 : 별지 제2호 서식
- (3) 과원임대 : 별지 제3호 서식
- (4) 과원임차 :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 과원규모화사업계획서

□ 경영주 현황

주소					전화번호	-
성명	(한자 : ) (인)				주민등록번호	-
후계농업인출신여부	과수( ) 일반농가( ) 기타( )			겸업시 업종명 :		
고품질안전과실생산여부 (GAP,IFP,IPM 등)				과수재해보험 가입여부		
자산	동산 계	천만원	부동산 계	천만원	부채 계	천만원
세 부 내 역	현 금		도 지		농지구입·임차	
	현 물		건 물		시설자금	
					가계성부채	
					기 타	

※ GAP : 우수농산물관리제도, IFT : 환경친화적과실종합생산시스템, IPM : 병해충 종합관리

1) 현재의 영농 기반

구 분	농 지 (㎡)				시 설	
	계	논	밭	과 원	종 류	규 모
소 유						
임 차						
계						

※ 소유 또는 임차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 임차의 경우에는 5년이상 임차하여 농지원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

2) 농기계 보유현황

기 종	마력(형식)	대수	연식	상태	기 종	마력(형식)	대수	연식	상태
				상중하					상중하

3) 농업노동력 현황

성명	연령	관 계	성명	연령	관 계
		본 인			
		배우자			
		자 녀			

※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자로서 18세이상 65세미만인 경우만 기재

4) 최근 3년간 농업경영장부 등 기록여부

연 도 별	2003	2002	2001	비 고
기록여부				

□ 사업계획서 및 경영규모확대계획

1) 당해연도 자금투자계획

사업명	시기	규모	투자계획(백만원)			비고
			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과원매입		평				
과원임차		평				
계						

2) 최근 3년간 정부지원자금 등 수혜내용(후계자·전업농자금)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지원액	상환잔액	연도	사업명	지원액	상환잔액
				계			1

3) 향후 3년간 경영계획(경영개선계획)

○ 요약

연도별	경영규모(평)	과수재배면적(평)	목표농업소득	기타 참고사항
	○ 소유 : ○ 임차 : 계			
	○ 소유 : ○ 임차 : 계			
	○ 소유 : ○ 임차 : 계			
	○ 소유 : ○ 임차 : 계			
	농기계보유계획 등			

( 작성요령 )

정부는 경영규모확대와 과수생산비 절감 등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주도해 나갈 과수생산 전문경영체를 확보하기 위해 과원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규모확대와 생산비절감을 위해 향후 3년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자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1) 첫째, 자신이 경영규모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여건분석을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현재 주위에서 과수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중 향후 3년내에 과수농사를 그만둘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 사람이 언제쯤 과수농사를 그만두면서 얼마나 많은 과원을 팔거나 남에게 빌려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시고,
- 2) 둘째, 그 과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경영규모를 늘려 나갈 것인지(살 것인지, 빌릴 것인지: 살 경우에 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빌린 돈은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지 등)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 3) 셋째로는, 경영규모를 늘려 나감에 따라 새로 발생하게 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예를 들면, 어떤 농기계를 언제쯤 어떤 자금으로 구입하여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과실을 어떻게 팔 것인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노동력 투입을 계속 줄이고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방법은 무엇인지 등)를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 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 서식]

과원규모화사업 정산서

1. 총괄

가. 수입

(단위 : 원)

과 목	예산(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B)	비 고
		사업비(B)	이익금(C)	계(D)		
계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 이익금						
-						

나. 지출

(단위 : 원)

과 목	예산(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B)	비 고
		사업비(B)	손실금(C)	계(D)		
○ 사업비						
- 과원매매						
- 장기임대차						
○ 손실금						
-						

2. 사업별

가. 과원매매

시도별	사 업 량(ha)			사 업 비(원)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비 고
			%				

나. 과원장기임대차

시도별	사 업 량(ha)			사 업 비(원)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계 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비 고
			%				

3. 손익금 및 기타정산자료는 임의서식 사용

[별지 제7호 서식]

## 사업승계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승계사유(구체적으로) :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계
당초사업자				승계희망자의 ( )
승계희망자				당초사업자의 ( )
사업승계로 인한사업계획 변경사항				

과수영농기반을 승계하거나 승계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기에 위와 같이 사업승계를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승계희망자 (자필서명 및 날인)

당초사업자 (자필서명 및 날인)

**농업기반공사 사장 귀하**

덧붙임 : 영농승계확인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 사업계획 변경 통지서

1. 주 소 :
2. 성 명 : (전화번호 :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계획 변경사유 :
5. 사업계획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변 경 사 유
사 업 명 사업내용 및 규모				
자금 내역	○ 지원금액 계(A) (국고용자) (국고보조) (기 타) ○ 자 부 담(B) 합 계(A+B)			

위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 ○ ○ (인)

농업기반공사사장 귀하



과원규모화사업 추진실적보고서( / 분기)

1. 총괄

(단위 : ha, 호, 백만원)

사업별	계 획				신청접수				지원실적					
	년간		금분기		농가	면적 (C)		금액 (D)		농가	면적 (E)		금액 (F)	
	면적 (A)	금액 (B)	면적	금액		% (C/A)	% (D/B)	% (E/A)	% (F/B)					
과원매매														
임대차														
계														

2. 도별 지원실적(금분기/누계)

(단위 : 호, ha, 백만원)

시도별	연간계획		과원매매			임대차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계								

## 사후관리상황조사결과보고서

### 1. 조사결과

(단위 : 명, ha, 백만원)

구분	조사대상		조 사 결 과																								
			정상 (본인경작)		조 치 활 사 항																						
					계			전업·이주			전 매			임대및대리 경작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계																											
과원매매																											
임 대 차																											

### 2. 조치결과

(단위 : 명, ha, 백만원)

구분	조 치 결 과																							
	계			전업·이주						전 매						임대 및 대리경작								
	인원	면적	금액	원상회복		자금회수		과원회수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계																								
과원매매																								
임 대 차																								

## 2

##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 1. 목 적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칠레산 과실의 수입증가로 국산 과실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부분을 보전함으로써 과수 재배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

### 2. 시책 및 추진방향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품목을 생산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
- 당해연도 국내 생산량대비 수입량의 비율이 일정비율이상으로 증가하고 지원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지원
- WTO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
  - 사업시행기간 : 2004~2010년 (7년간)

###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5조

### 4. 사업시행 요령

#### < 사업개요 >

#### 가. 사업내용

##### (1) 지원대상

- 지원대상품목 : 시설포도(가온이 가능한 완전밀폐형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포도), 키위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04.5.24)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서 당해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품목고시일 이후 신규로 조성한 과원
  - 노지 포도 생산자
  
- (2) 지급단가 :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보전비율 80%를 곱하여 산출한 가격
  - 지급단가 : (기준가격 - 당해연도 평균가격)×80%
    - 기준가격 : 시설포도 4,560원/kg, 키위 1,700원/kg
    - \* 기준가격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고시일 직전 5년간의 주출하시기의 평균가격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80%를 곱하여 산출한 가격
  
- (3) '04 지원계획 : 13,917백만원 (2,514ha)
  - 지원조건 : FTA기금보조 100%
  
- (4)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산출방법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지급단가×조정계수
    -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품목별 단위면적당 표준재식주수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을 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 표준재식주수(10a당) >

- 시설포도 : 울타리식 100주, 평터식 20주, 키위 : 20주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신청과원의 실제재식된 주수가 표준재식주수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면적을 지원 대상면적으로 인정하고, 표준재식주수이하일 경우에는 과원 실제면적에 표준 재식주수 대비 실제 재식주수비율을 곱하여 지원대상 면적 산정

⇒ 지원대상면적 = 과원실제면적 × 실제 재식주수/표준 재식주수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직전 5년간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산량이 경우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은 농림부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작물통계조사(농림통계연보)에 의한 당해품목의 생산량을 재배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말하고, 작물통계조사의 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산물소득조사(농축산물표준소득자료집)에 의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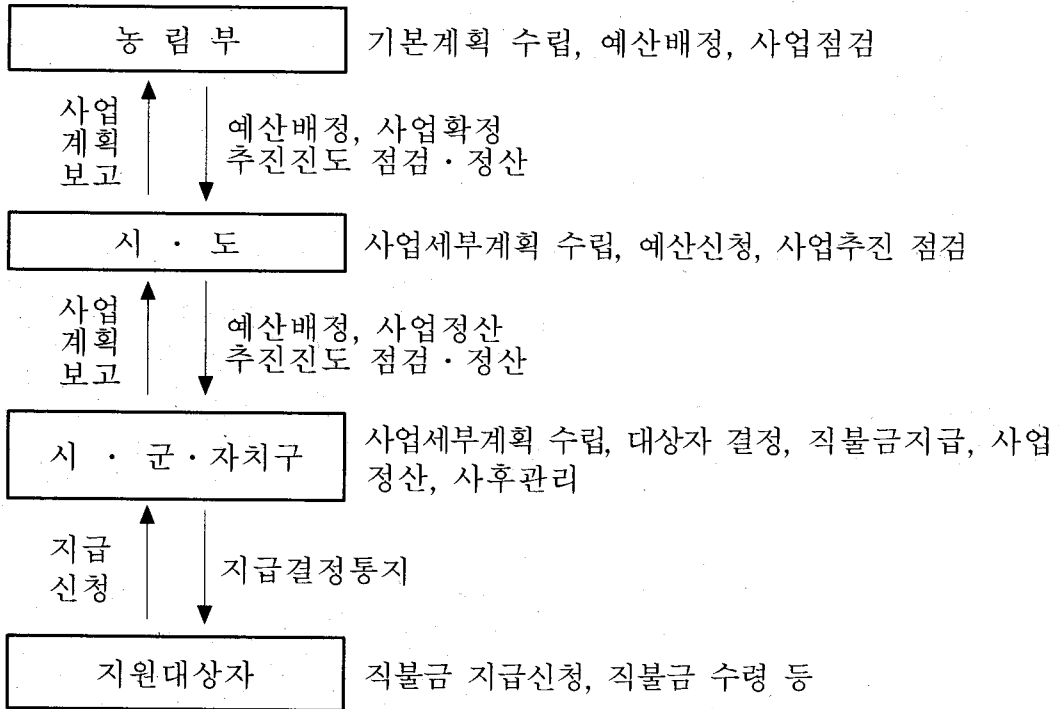
\* 조정계수 : 당해품목의 최소허용보조액 ÷ 지급신청 총액(산출결과 1을 초과할 수 없음)

- 당해품목의 최소허용보조액 : 품목총생산액×10%(WTO허용 보조율)
- 조정계수는 지급총액이 WTO 최소허용 보조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는 것이므로 지급신청총액이 WTO 최소허용보조를 초과할 경우에만 최소허용 보조액과 같아지도록 조정

#### (5) 사업추진 절차

- ① 사업지침통보(농림부 → 시·도)
- ② 사업지침공고(시·군·자치구)
- ③ 직불금지원 심사요청(전국단위 생산자 조직 → 농림부)  
- 직불금 지급요건이 발생될 경우
- ④ 지원 계획시달(농림부 → 시·도 → 시·군·자치구)
- ⑤ 직불금 지급신청(신청인 → 시·군·자치구)
- ⑥ 신청서 등 조사·확인(시·군·자치구·농업기술센터)
- ⑦ 지원대상자 심의 및 결정(시·군·자치구·농정심의회)
- ⑧ 사업세부 계획보고 및 예산배정요구(시·군·자치구 → 시·도 → 농림부)
- ⑨ 예산배정(농림부 → 시·도 → 시·군·자치구)
- ⑩ 직불금 지급결정 통지(시·군·자치구 → 신청인)
- ⑪ 직불금 지급(시·군·자치구 → 신청인)

< 사업추진 체계도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과수화훼과(02-500-1873~1883)
- 시·도 : 원예담당부서
- 시·군·자치구 : 원예담당부서

다. 사업시행요령

(1) 사업지침 수립·통보

- 농림부장관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 자치구청장)에게 통보

## (2) 사업홍보

### ○ 사업내용공고 및 홍보

- 시·군·자치구에서는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지침을 시·군·자치구(읍·면·동)의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

## (3) 직불금 지원심사요청

### ○ 요청주체 : 전국단위의 당해품목 생산자 조직

### ○ 요청기관 : 농림부(과수화훼과)

### ○ 지원요건 : 아래의 각 지원요건이 동시에 해당될 경우 지원

- 지원대상품목의 국내생산량대비 칠레산 수입량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증가

-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이상이면서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증가

- 또는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5%이상 증가

- ※ 수입량 산출시점 : 포도 1~6월, 키위 4~5월

- 지원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 ※ 당해연도 평균가격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주 출하시기 동안에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거래금액을 거래물량으로 나눈 단위중량당 가격

- ※ 주출하시기 : 시설포도 3~6월, 키위 11~익년5월

- ※ 거래금액 및 거래물량은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지방공사에서 집계한 품목별 거래금액 및 거래물량

- 관측정보등에 따라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요건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생산자조직의 요청이 없더라도 농림부에서 직권으로 지원요건 심사

(4) 지원계획시달

- 지원요건 심사결과 지원요건에 해당될 경우 당해품목에 대한 지급단가등 세부지원계획을 시·도에 시달

(5)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

- 신청시기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계획 시달시 통보
- 신청기관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원예담당부서)
- 신청서류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 등기부등본등 지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6) 신청서 등 조사·확인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업 기술센터와 합동으로 토지대장등 관련서류를 토대로 다음사항을 조사·확인(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필히 현지조사·확인)

< 신청서 등 조사·확인할 사항 >

- 영 제3조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품목을 실제 생산한 농업인인지 여부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역·생산기간 및 생산면적 등 신청내용의 사실여부
  - 신청인의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등을 농지원부 등으로 확인 (필요시 마을 이장등을 통해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등을 조사·확인 후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자 확인결과서 (별지 제2호 서식)작성 비치
  - 기타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 ※ 조사·확인한 관련 서류는 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부착하여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최종지급일부터 5년간 보관 관리



(7) 지원대상자 심의 및 결정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적합할 경우에는 농정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8) 사업세부 계획보고 및 예산배정요구

-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소득보전직불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별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세부계획서를 취합 검토하여 시·도 소득보전직불사업세부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농림부장관에 보고 및 소득보전직불사업예산(자금)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

(9) 예산배정

- 농림부에서는 시·도의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세부계획서 및 소득보전직불사업예산(자금) 신청서를 검토 후 시·도에 예산배정
- 시·도에서는 농림부로 부터 배정된 예산을 시·군·자치구에 재배정

(10)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후 지원대상자 및 사업량을 변경시에는 시·군·자치구의 사업비 내에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승인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행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포기나 지원대상자의 추가 등으로 사업비 과부족이 발생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변경 시행
  -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간의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시행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계획 변경시 계통보고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전체 사업량 변경이 없는 경우는 농림부보고 생략

(11) 직불금 지급결정 통지 및 지급

- 시·군·자치구에서는 배정된 예산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소득보전직접 직불금 지급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송부하고 그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소득보전 직접직불금 입금

라. 사업비 정산

- 사업비는 보조금 관련 법률 및 사업지침에 의거 집행하며, 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보고한 소득보전직불사업 정산서(별지 제7호 서식)를 검토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동서식에 의거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기타사업은 “농림부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과 보조금 관련 제규정에 따름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소득보전직불금 최종지급한 후 5년간 소득보전직불금수령자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기록관리
- 소득보전직접직불금 지급후 다음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지원요건에 부적합한자로 판명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원된 직불금을 회수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견되었을 경우

## 나. 보 고

○ 소득보전직불금 지급결과보고(별지 제6-1호, 제6-2호 서식)

- 시·군·자치구(완료후 5일이내) → 시·도(시·군·자치구 보고된 후 5일이내) → 농림부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별도 수시보고

## 5. 2005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자치구(원예담당부서)

나. 신청자격 : 지원대상품목고시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실제생산(경작)하는 농업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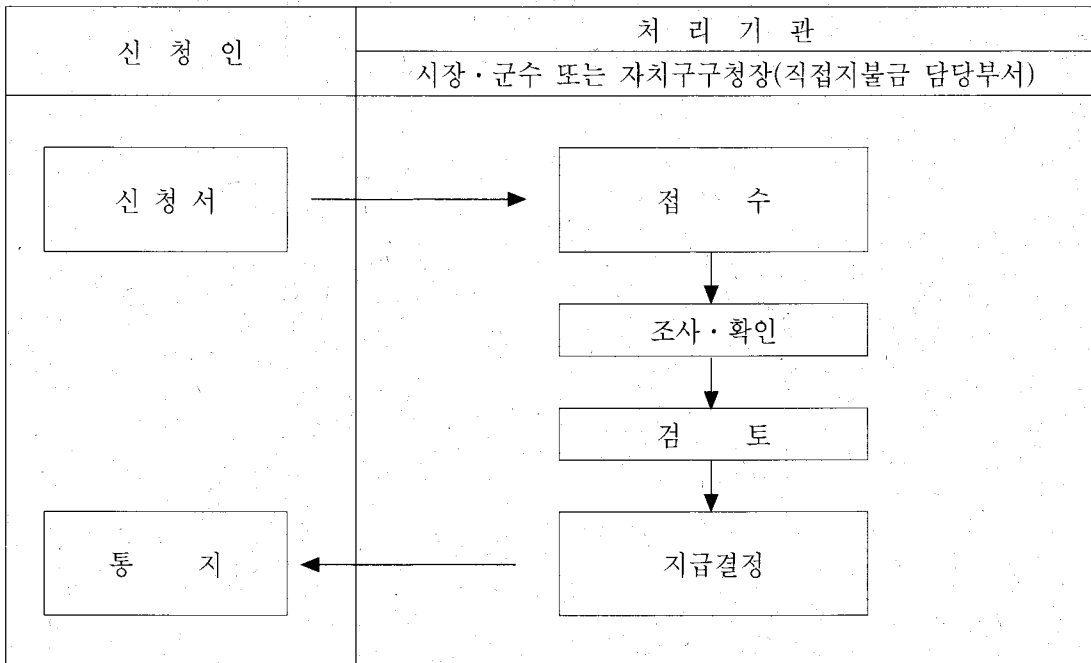
다. 신청기간 : 지원요건 발생시 추후시달



\* 기재요령

- ① ~ ③란은 신청품목 생산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생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를 각각 기재합니다.
- ⑤ ~ ⑨란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고시된 품목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 등의 공부상 소재지와 지목·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 ⑩란은 신청품목을 실제 생산한 기간(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⑪란은 신청품목의 실제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어선을 이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업종류 및 어선의 톤수)을 기재합니다.
- ⑫란은 어업등 분야의 신청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당해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⑬·⑭란은 농업등 분야의 신청의 경우에 한하며 신청일 현재 신청품목외에 신청인이 생산하고 있는 작물의 품목명과 그 생산면적을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 확인결과**

○ 신청자

품목별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확인내용			자경여부	비고
				생산면적	생산기간	생산지역		
시 설 포 도								
	소 계	○○명 신청						
키 위								
	소 계	○○명 신청						
	소 계	○○명 신청						
총 합 계		○○명 신청						

※ 신청면적과 확인면적이 다른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 제외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면적(m <sup>2</sup> )	제외사유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농지가 신청 대상과원이 아닌 경우

200 년 월 일

확 인 자

○○ 시·군·구 직 성명 (인)  
○○ 시·군농업기술센터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소득보전직불사업 세부계획서

(단위 : ha, 천원)

시·군	과종별	사업량	사업비(기금)	농가수
합 계	계			
	시설포도			
	키 위			
○ ○시	소계			
	시설포도			
	키 위			
○ ○군	소계			
	시설포도			
	키 위			
○ ○군	소계			
	시설포도			
	키 위			

[별지 제4호 서식]

소득보전직불사업 예산(자금) 신청서

(○ ○시·도)

(단위 : 천원)

사 업 별	예산액	자금신청			비 고
		기배정	금회신청	누계	
합 계					
시설 포도	소 계				
	○ ○시				
	○ ○군				
	.				
키 위	소 계				
	○ ○시				
	○ ○군				
	.				



### 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결정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액 : 원 (금 원)
5. 지급내용

품 목	생산면적 또는 어선톤수	단위면적당 또는 어선톤당 평균생산량	지급단가 (원)	조정 계수	지급액 (원)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예금기관명·계좌번호) :
8. 입금예정일자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6-1호 서식]

<시·군·자치구용>

소득보전직불금 지급결과 보고(   년도)

수 신 : ○ ○시·도지사

발신 : ○ ○시·군·자치구

<직불금 지급내역>

읍·면·동	과종별	자 금 배정액	지급실적			불용 또는 집행잔액
			농가수 (호)	지급면적 (㎡)	지급액 (천원)	
합 계	합 계					
	시설포도					
	키 위					
○○읍	소 계					
	시설포도					
	키 위					
○○면	소 계					
	시설포도					
	키 위					

<불용·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시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6-2호 서식]

<시·도용>

소득보전직불금 지급결과 보고(   년도)

수 신 : 농림부장관

발신 : ○ ○시·도지사

<직불금 지급내역>

읍·면·동	과종별	자 금 배정액	지급실적			불용 또는 집행잔액
			농가수 (호)	지급면적 (㎡)	지급액 (천원)	
합 계	합 계					
	시설포도					
	키 위					
○ ○읍	소 계					
	시설포도					
	키 위					
○ ○면	소 계					
	시설포도					
	키 위					

<불용·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시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소득보전직불사업 정산서

1. 총괄

가. 수입

(단위 : 원)

구분	예산(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B)	비고
		사업비(B)	이익금(C)	계(D=B+C)		
계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						
○이익금						
-						

나. 지출

(단위 : 원)

구분	예산(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B)	비고
		사업비(B)	손실금(C)	계(D=B+C)		
계						
○사업비						
- 시설포도						
- 키워						
○손실금						
-						

2. 과중별

가. 시설포도

시군별	사업량(ha)			사업비(원)			비고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				

나. 키워

시군별	사 업 량(ha)			사 업 비(원)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계 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비 고
			%				

3. 기타 정산자료는 임의서식 사용

[별지 제8호 서식]

(작성일자 : . . . )

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 관리대장(○ ○읍·면·동)						관리 번호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내역	연도별	품목별	소 개 지			지번 (지목)	영농 기간	생산면적(m <sup>2</sup> )
			시·군	읍·면	리·동			
지 급 내 역								
지급 년월일	품목	생산면적(m <sup>2</sup>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지급 단가(원)	조정 계수	지급액 (원)	입금계좌	
							○○농협(은행) ○○○-○○-	

### 3

## 과원 폐업 지원사업

### 1. 목 적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재배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

### 2. 시책 및 추진방향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지원대상품목의 과원소유자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지급
- 과수산업의 규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원규모화사업과 연계 추진
  - 사업시행기간 : 2004~2008년(5년간)

###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6조

### 4. 사업시행 요령

#### < 사업개요 >

#### 가. 사업내용

#### (1) 지원대상

- 대상품목 : 시설포도(가온이 가능한 완전밀폐형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포도), 키위, 복숭아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품목 고시일('04.5.24)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생산하던 과원(과수목)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등(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서 당해 과원 전체를 폐원하거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등의 요건에 충족되는 자에게 양도하는 자

- 과수재배농가의 경영규모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에 과원을 매도하는 농업인 등을 포함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품목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 건축·도로개설 그밖의 시설물의 설치등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 당해 과원을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의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당해 과원이 개발계획지구로 선정되었거나, 저수지 조성등 국가사업 추진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보상이 확정된 경우
  - 품목고시일 이후에 신규로 조성한 과원의 경우
  - 국·공유지에 식재한 과수목의 경우(다만, 국공유지를 임차계약하여 재식한 경우는 제외)
  - 당해 시·군·자치구내의 소유 과원전체를 폐업하지 않고 부분 폐업(철거·폐기)하거나 부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지원금을 받고 양도한 과원을 매입한 자가 재 폐원하거나 재 양도하는 경우
- 지원이 가능한 경우
  - 폐원에 따른 경비 부담으로 일시에 폐원하기가 곤란하여 2년간에 걸쳐 분할 폐원코자 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연도 폐원면적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되, 2년내 전체면적이 폐원되지 않을 경우 기 지원금을 환수
  - 노지포도와 시설포도를 같이 재식된 과원의 경우로서 시설포도만을 완전폐원 하는 경우

(2) 지원대상 품목별 지원단가(안)

- 폐원 : 시설포도 10,315천원/10a, 키위 4,148, 복숭아 3,447
- 양도 : 시설포도 3,438천원/10a, 키위 1,382, 복숭아 1,149
- \* 이 지원단가는 '98-2002년도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조사통계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단가이므로, 2003년도 통계가 작성되면 '99-2003년도 통계자료를 근거로 지원단가를 산정·확정할 계획임



(3) '04지원계획 : 23,368백만원(632ha)

○ 폐원 : 21,420백만원(500ha)

○ 양도 : 1,948백만원(132ha)

\* 지원조건 : FTA기금보조 100%

(4) 지원금 산출방법

○ 폐원 : 폐원면적×지원대상품목별 지원단가

○ 양도 : 양도면적×지원대상품목별 지원단가

(5) 지원대상(폐원 또는 양도)면적 산정

○ 폐업지원금 지원신청과원의 실제 재식된 주수가 표준재식주수이상일 경우에는 신청면적을 지원대상면적으로 함

< 표준재식주수(10a당) >

- 시설포도 : 울타리식 100주, 평터식 20주

- 복숭아 : 자연형 24주, Y자형 42주

- 키 위 : 20주

○ 다만, 폐업지원금 지원 신청과원의 실제 재식된 주수가 표준재식주수이하로 재식되었을 경우에는 과원 실제 면적에 표준재식주수 대비 실제 재식주수비율을 곱하여 지원대상면적 산정

⇒ 지원대상면적 = 과원실제 면적×실제 재식주수/표준 재식주수

(6) 사업추진절차

① 사업지침통보(농림부 → 시·도)

② 사업지침공고(시·군·자치구, 읍·면·동)

③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신청인 → 시·군·자치구)

④ 신청서등 조사·확인(시·군·자치구)

⑤ 지원대상자 심의 및 결정(시·군·자치구, 농정심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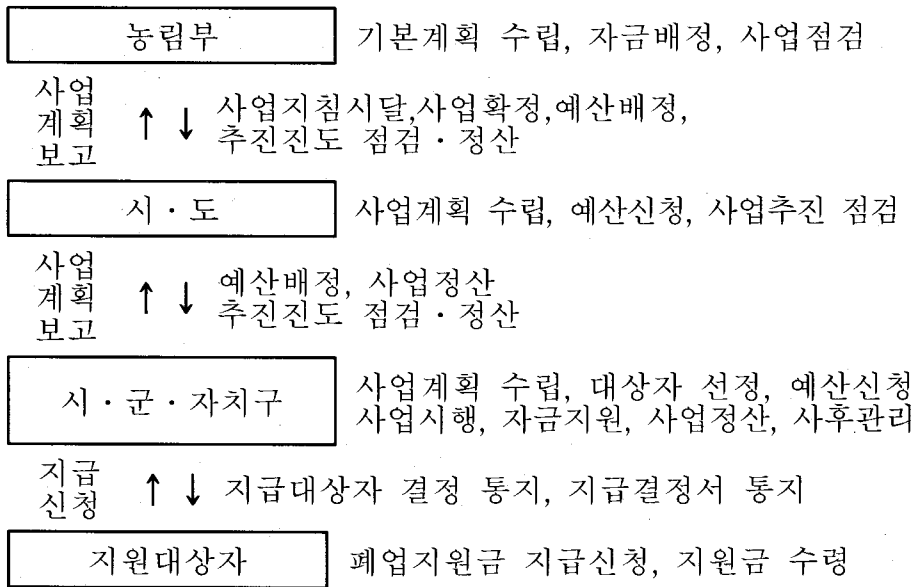
⑥ 폐업지원사업세부계획보고 및 예산배정요구(시·군·자치구 → 시·도 → 농림부)

⑦ 예산배정(농림부 → 시·도 → 시·군·자치구)

⑧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시·군·자치구 → 신청인)

- ⑨ 폐원(양도)예정일자 통보(신청자 → 시·군·자치구)
- ⑩ 폐원등 현지확인·조사(시·군·자치구·농업기술센터)
- ⑪ 폐원(양도) 결과 통보(신청인 → 시·군·자치구)
- ⑫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서 통지(시·군·자치구 → 신청인)
- ⑬ 폐업지원금 지급(시·군·자치구 → 신청인)

< 사업추진 체계도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업무협조기관 : 농업기술센터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과수화훼과(02-500-1873~1883)
- 시·도 : 원예담당부서
- 시·군·자치구 : 원예담당부서

## 다. 사업시행요령

### (1) 사업지침 수립·통보

- 농림부 장관은 과원폐업지원사업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통보

### (2) 사업홍보

- 사업내용공고 및 홍보
  - 시·군·자치구에서는 과원폐업지원사업 지침을시·군·자치구(읍·면·동)의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

### (3)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 신청시기 : '04년 사업시행지침통보후 부터 7월31일까지
- 신청기관 : 폐업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원예담당부서)
- 신청서류 : 농업등 분야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 등기부등본등 폐원(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과원(과수목 포함)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과원(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등본 및 아래와 같이 양도계약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된 양도계약서(다만, 신청인이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철거등의 결과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기전까지 양도계약서 제출)
  - 계약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 년월일
  - 양도대금 및 지급일자에 관한 사항
  -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건이나 기한

(4) 신청서등 조사·확인

- 폐업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 대장 등 관련서류를 토대로 다음 사항을 조사·확인(재식주수 확인등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필히 현지조사·확인)

< 신청서등 조사·확인할 사항 >

-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지원금 지급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 품목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지 않을 것
  - 건축·도로 개설등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등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지 않을 것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등에게 양도하여야 할 것(당해 과원의 양수로 인하여 농산물의생산자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 등의 요건에 충족된 자 포함)
  - 품목고시일 이전부터 당해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과원을 품목고시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 일 것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지역, 생산기간, 철거·폐기 또는 양도면적, 양수인의 생산현황 등 신청내용의 사실여부
  - 폐원 또는 양도면적은 품목별 표준재식주수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현지조사·확인을 실시한 후 생산에 이용된 면적중 폐원(철거·폐기)또는 양도한 면적
  - 폐업지원대상자가 폐업대상 과수목의 실제 소유자일 것
  - 당해 시·군·자치구내의 소유과원전체를 폐원 또는 양도할 것
  - 당해 과수목이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보상계획으로 선정된 과수목이 아닐 것
-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기타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등

(5) 지원대상자 심의 및 결정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서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적합할 경우에는 농정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6) 사업세부계획 보고 및 예산(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폐업지원사업세부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별 폐업지원사업세부계획서를 취합 검토하여 시·도 폐업지원사업세부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농림부장관에 보고 및 폐업지원사업 예산(자금)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8월 31일까지 제출

(7) 예산배정

- 농림부에서는 시·도의 폐업지원사업세부계획서 및 예산(자금)신청서를 검토 후 시·도에 예산배정
- 시·도에서는 농림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시·군·자치구에 재배정

(8) 지원대상자 결정 통지

- 시·군·자치구에서는 농림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근거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송부

(9)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후 지원대상자 및 사업량을 변경시에는 시·군·자치구의 사업비 내에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승인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행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포기자나 지원대상자의 추가 등으로 사업비 과부족이 발생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변경 시행
  -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간의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시행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계획 변경시 계통보고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전체 사업량 변경이 없는 경우는 농림부보고 생략

(10) 폐원(양도)예정일자 통보

-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은 지급대상자는 폐원(양도) 예정 일자를 구술등으로 시·군·자치구에 통보
- 양도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 예정일자 통보

(11) 폐원 등 현지 확인·조사

- 폐원지원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폐원예정일자 통보를 받은 시·군·자치구는 폐원일에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폐원(양도)현지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폐원과원을 현지 확인·조사

< 현지 확인·조사할 사항 >

- “(4) 신청서등 조사·확인” 에서 정한 조사·확인할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 폐원대상 과수목을 완전히 굴취하였는 지 여부
- 기타 현지조사에 필요한 사항등
- ※ 폐원 전·중·후 사진 촬영 후 보관(폐원당일 현지확인·조사시 해당 과수목 굴취 전·중·후 작업 진행과정 사진 촬영확보)

(12) 폐원(양도) 결과 통보

-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폐원 또는 양도한 후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
- 양도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즉시 등기부등본을 시·군·자치구에 제출

(13)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서 통지 및 지급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폐원 또는 양도결과를 통보받은 시·군·자치구에서는 완전히 폐원 또는 양도하였는지 폐원현장 등을 최종 확인 후(양도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부 등본을 송부 받은후) 완전히 폐원 또는 양도되었다고 확인될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 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송부하고 그 대상자가 지정한 예금 계좌에 폐업지원금 입금
-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자금을 기 지원 받은 자가 폐업할 경우 기 지원받은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보조금을 차감한 후 지급

라. 사업비 정산

- 사업비는 보조금 관련 법률 및 사업지침에 의거 집행하며, 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보고한 폐업지원사업정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검토한 후 미흡시 보완을 요구하고 적합시에는 익년도 1월말일까지 동 서식에 의거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
-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과 보조금 관련 제규정에 따름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폐원 또는 양도지원금을 지급한 후 5년간 사후관리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지원대상품목을 다시 식재하지 않도록 계속지도·관리하고, 양도지원금을 지급받은 과원에 대해 재차 양도 및 폐원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도·관리

- 폐원지원금이 지급된 과원을 양수한 자가 양수일부터 5년 이내에 폐원 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재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7호 서식)와 폐업지원사업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
  - 폐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원(필지)별로 폐원현장(전·중·후) 사진을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7호 서식)에 부착하여 관리
  - 폐원한 과원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하여 매년 상반기중 1회 현지확인 후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7호 서식)를 5년이상 기록 관리
  - 양도한 과원에 대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 7호 서식)에 부착하여 소유권이전 사항 확인 및 관리

#### 나. 지원금의 환수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환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과오 지급된 경우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 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하는 경우
    -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써 과원토지소유자의 동의 하에 과수목 소유자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동 토지에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하는 경우
    - 폐원지원금이 지급된 과원을 양수한 자가 양수일부터 5년 이내에 폐업 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재배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지원금 환수
  - 2년간에 걸쳐 분할 폐원코자한 농업인들이 연이어 2년째 폐원치 않을 경우에는 폐원 첫해에 기지원된 보조금 환수



## 나. 보고

-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
  - 시·군·자치구별, 사업별·품목별 폐업지원사업세부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및 폐업지원사업 예산(자금)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 2004년 8월 31일까지
  - 폐업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별지 제9호 서식) : 매분기말 익월15일까지
  - \*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별도 수시 보고

## 5. 2005년도 사업신청

- 신청서 제출기관 : 과원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원예담당부서)
- 신청서 제출기간 : 2005. 1~2
- 폐업지원 사업세부계획서 제출 : 3월말(시·도 → 농림부)

농업등 분야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input type="checkbox"/> 철거·폐기 <input type="checkbox"/> 양도							30 일		
신청인 (소유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⑤ 폐업 품목	⑥ 소 재 지			⑦ 지번	⑧ 지목	⑨ 면적 (m <sup>2</sup> )	⑩ 철거·폐기 ·양도면적 (m <sup>2</sup> )	⑪생산기간
		시·군	읍·면	리·동					
⑫작목 전환 계획	채 소 (m <sup>2</sup> )	화 훼 (m <sup>2</sup> )	축 산 (m <sup>2</sup> )	일 반 작 물 (m <sup>2</sup> )	기 타 ( ) (m <sup>2</sup> )				
⑬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생산 현황	품목	1.		2.		(기타)		
		생산면적(m <sup>2</sup> )							
⑭폐업지원금 입금계좌(예금 금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자치기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 등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서 1부. 다만, 신청인이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철거 등의 결과통보를 하기 전까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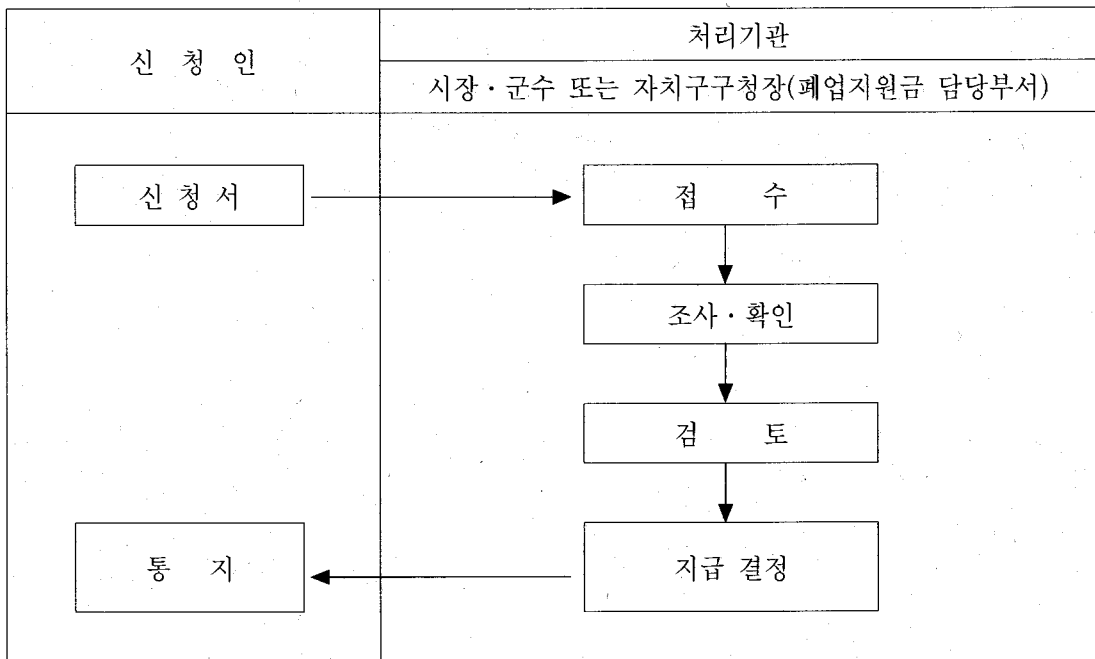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뒤 쪽)

\* 기재요령

- ① ~ ③란은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를 각각 기재합니다.
- ⑤ ~ ⑨란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고시된 품목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 등의 공부상 소재지와 지목·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 ⑩란은 토지대장·농지원부 등 공부상의 면적이 아닌 실제 당해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중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면적을 기재합니다.
- ⑪란은 폐업하고자 하는 품목을 실제 생산한 기간(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⑫란은 폐업후 작목전환계획이 있는 경우에 채소·화훼·축산·일반작물·기타업종 등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 및 그 면적을 기재합니다.
- ⑬란은 양도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양수인의 생산현황은 양수인이 생산하고 있는 주 품목 2개를 기재하고 나머지 품목은 기타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폐업지원금 결정내용

폐업종류	품 목	신청면적(m <sup>2</sup> ) 또는 규모	지급대상 면적(m <sup>2</sup> ) 또는 규모	변경 사유

5. 준수사항 : 당해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한 후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결과를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 폐업지원금지급결정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폐업지원금 지급액 : 원 (금 원)
5. 폐업지원금 지급내용

폐업종류	품 목	지급면적(m <sup>2</sup> ) 또는 규모	지급단가(원)	지급액(원)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예금기관명·계좌번호) :
8. 입금예정일자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폐업지원사업 세부계획서

(단위 : ha, 천원)

시·군	과종별	사 업 량			사업비(기금)			농 가 수		
		계	폐원	매도	계	폐원	매도	계	폐원	매도
합계	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시	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군	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군	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폐업지원사업 예산(자금)신청서

(○ ○시·도)

(단위 : 천원)

사업별	예산액	자금신청			비고
		기배정	금회신청	누계	
합계					
폐원	소계				
	○ ○시				
	○ ○군				
	.				
양도	소계				
	○ ○시				
	○ ○군				
	.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폐원(양도)현지 확인서**

신청인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기신청 내용	폐업품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철거, 폐기, 양 도면적(㎡)	생산기간	
		시군	읍면	리동						
								~		
								~		
								~		
신청내용 조사결과	폐업품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철거, 폐기, 양 도면적(㎡)	생산기간	
		시군	읍면	리동						
								~		
								~		
								~		
신청내용 변동내역 및 변경사유										
기타조사 사항	①과원조성일자									
	②해당필지 전체폐 원·양도여부									
	③국·공유지 여부									
	④고시일직전1년이상 고시품목생산 및 방치여부									
	⑤폐원후 다시재배할 농가인지 여부									
	⑥폐기대상과수목 완전굴취여부									
	⑦기타 조사사항									
<b>확 인 자</b>										
						년	월	일		
○ ○시·군·자치구					직	성명		(인)		
○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	성명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 폐업지원사업 관리카드

< 폐원 >

○ 현황

사업년도	과 종	사업대상자		과원 소재지			폐원현황		사업비 (기금보조)	전환 작목	보조금 지급일
		성명	주소	리동	지번	면적	품종 (수령)	면적			
						m <sup>2</sup>					

○ 점검내용

점검일시	점검내용	점검자				점검결과 (특기사항 포함)
		소속	직	성명	서명	

- 주 1) 점검내용에는 사업전·중·후 및 사후관리로 기재  
 2) 합동확인인 경우 확인자 모두 서명 날인해야함

○ 점검사진

폐원전	폐원중	폐원완료

< 양도 >

○ 현황

사업년도	과 종	사업자(매도자)		매도과원 현황				매수인		사업비 (기금보조)	보조금 지급일
		성명	주소	리동	지번	면적	매도 면적	성명	주소		
						m <sup>2</sup>	m <sup>2</sup>			천원	

○ 점검내용(사업시행전 지원대상에 적합여부를 확인)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특기사항 포함)	사 진
	소속	직	성명	서명		
						< 별첨 >

※ 관리카드는 지역실정에 맞게 변경 할 수 있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폐업지원사업 관리대장

< 폐원 >

(사업년도)

시군 (읍면·동)	과 종	사업대상자		과원 소재지			정비현황		사업비 (기금보조)	전환 작목	보조금 지급일
		성명	주소	리동	지번	면적	품종 (수령)	면적			
계						m <sup>2</sup>					

< 양도 >

(사업년도)

시군 (읍면·동)	과 종	사업자(매도자)		매도과원 현황				매수인		사업비 (기금보조)	보조금 지급일
		성명	주소	리동	지번	면적	매도 면적	성명	주소		
계						m <sup>2</sup>	m <sup>2</sup>			천원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 /4 분기)폐업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사업추진상황

시·군	과 종	사업물량(ha)			사업비(천원)			비 고 (농가수)
		계획	실적	실적율(%)	계획	집행	집행율(%)	
합 계	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 위							
폐원	계	소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 위						
	시·군 자치구	소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 위						
양도	계	소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 위						
	시·군 자치구	소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 위						

2. 금후사업 추진일정

3.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내역) 및 대책

[별지 제10호 서식]

## 폐업지원사업 정산서

1. 총괄  
가. 수입

(단위 : 원)

구분	예산(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B)	비고
		사업비(B)	이익금(C)	계(D)		
계						
○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						
○ 이익금						
-						

나. 지출

(단위 : 원)

구분	예산(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B)	비고
		사업비(B)	손실금(C)	계(D)		
계						
○ 시설비 - 폐원 - 양도						
○ 손실금 -						

2. 과종별

가. 폐원

시군별	과종	사업량(ha)			사업비(원)			비고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합계	계			%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 ○시	계			%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 ○군	계			%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나. 양도

시군별	과종	사 업 량(ha)			사 업 비(원)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계 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계			%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시	계			%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군	계			%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3. 손익금 및 기타정산자료는 임의서식 사용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11-1380000-001769-10

---

**2004년도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산업 시행지침서**

편 집 농림부 과수화훼과 / (02)500-1880

발 행 농 릫 부

인 쇄 현대문화인쇄 / (02)6300-2811~2

---

<비매품>